



KIEP 기초자료
26-05

2026년 7월 8일

일본의 디지털 자산 도입 추진과 시사점

김승현 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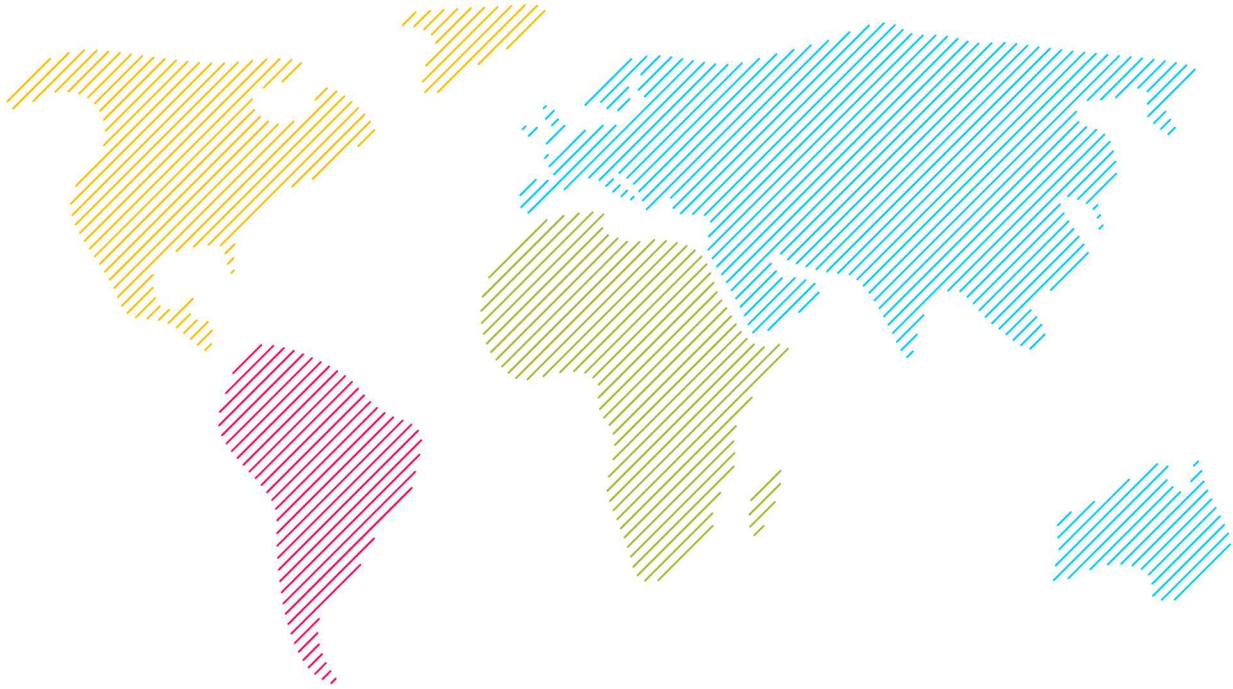
윤아경 (前)세계지역연구1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akyoon@kiep.go.kr, 044-414-1287)

일본의 디지털 자산 도입 추진과 시사점

요약

-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주요국들은 자국의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음.
- ▶ 일본정부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는데, 기존에는 주로 규제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도 병행 중임.
 -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따라 예금취급금융기관형(은행형), 자금이동업자형, 특정신탁 수익권형으로 구분됨.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동업자형 스테이블코인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형·신탁형의 경우 실증 및 발행 검토 단계임.
 - [토큰화 예금] 기존 은행법의 규제를 받으며, 현재 은행들이 소매결제, 대금 정산 등 소비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토큰화 예금을 도입하거나 실증을 시도하고 있음.
 - [ST] 처음부터 블록체인상에 발행되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 금융자산이 토큰화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ST의 경우 조기 발행시장 형성 등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 금융자산의 토큰화의 경우 현재 자산의 거래 이전 관련 실증실험이 진행 중임.
 - [암호자산·NFT] 기업이 보유한 암호자산·NFT의 미실현 이익(기밀 평가이익)에 기존에는 30%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2023년 세제를 개편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폐지하였음.
- ▶ 또한 최근에는 「자금결제법」 개정, 암호자산 관련 제도 재검토, DvP 결제 리스크 해소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재정비 및 관련 기술 발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금결제법 개정] 암호자산 교환업자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업자가 파산한 경우, 일본 국내 이용자의 자산 반환을 위해 자산의 국내보유명령을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자산의 국외유출 방지),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채(정기예금)로 준비자산을 운영(발행액 50% 상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완화함.
 - [암호자산 제도 재검토] 암호자산 소관 법령을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이관하고 과세를 최대 20% 수준으로 완화하였으며, 운용사가 암호자산이 포함된 투자신탁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신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임.
 - [DvP 결제 리스크 해소] 토큰화 예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DvP(증권-대금 동시결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실증 및 발행 검증이 완료됨.
- ▶ 본고에서는 스테이블코인, ST, 가상자산(암호자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제시함.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아직은 은행 중심인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핀테크 기업 등에 제한적으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ST] 소규모 토큰들이 대량 유통될 가능성을 고려한 장외거래소 추진 방안, DvD 결제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상자산]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등과 관련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책정 등의 논의 추진 외에도 향후 가상자산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한 제도 확충 및 규제 개선안 등의 조기 검토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차 례

1. 논의 배경
2.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 현황
 - 가. 미국
 - 나. EU
 - 다. 영국
 - 라. 싱가포르
 - 마. 한국
3.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과 현황
 - 가.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경과
 - 나. 주요 디지털 자산 현황
 - 다. 최근 동향
4. 평가 및 시사점
 - 가. 평가
 - 나. 시사점

참고문헌

1. 논의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의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IMF(2025a)에 따르면, 2025년 3/4분기 기준으로 전 세계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치인 4조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2024년 12월 대비 약 13% 이상 증가한 수치임(그림 1 참고).¹⁾
 - 암호자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동일 기간 약 9% 증가하여 처음으로 2조 5,000억 달러를 기록함.
-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2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3/4분기에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같은 기간 가장 널리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인 USDT(테더)는 9%, USDC(씨쿨)는 20% 증가함(그림 2 참고).²⁾

그림 1. 전 세계 암호자산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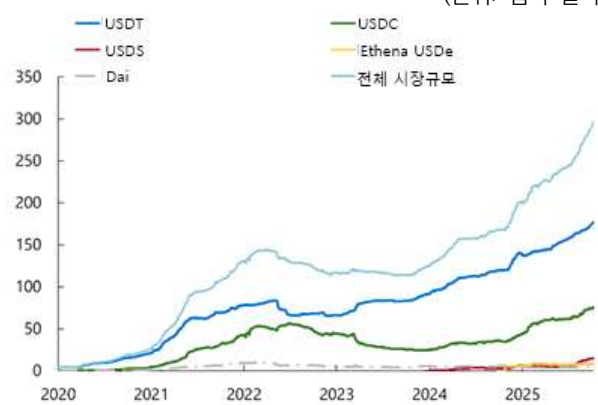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IMF(2025a).

그림 2.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 IMF(2025a).

■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주요 배경으로는 DLT(분산원장기술)³⁾의 발전 및 적용, 신흥국의 디지털 자산 수요 확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 [DLT 발전] OECD(2021)는 DLT 기술을 자산 토큰화(디지털 자산)에 적용하면 유동성 등이 향상되고, 자산의 분할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투자 장벽을 낮추며, 이전에는 접근하기 힘든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포괄적인 접근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함.⁴⁾ 또한 IMF(2025c)는 토큰화(디지털화)가 기술 변화에 의해 촉진된 금융 혁신으로, 2030년까지 자산의 디지털화가 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⁵⁾
- [디지털 자산 수요] 스테이블코인의 지역별 흐름을 살펴보면, GDP 대비 스테이블코인 자금 이동 비중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7.7%,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흥국에서 디지털

1) IMF(2025a), p. 2.

2) *Ibid.*, p. 9.

3)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약자임.

4) OECD(2021), p. 6.

5) IMF(2025c), p. 1.

자산 수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⁶⁾

- [인식 확대] OECD(2025)에 따르면 전 세계 39개 경제권에서 성인의 약 41%가 암호자산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성인의 약 10%가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음(각각 11%, 9%).⁷⁾

■ 주요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확산 흐름에 대응하여 자국의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중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디지털 자산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일본 역시 기존 법률과 자국 내 디지털 자산 시장 상황에 부합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 일본의 법제 현황 및 주요 디지털 자산[엔화 스테이블코인, ST(Security Token), 토큰화 예금, NFT(Non-Fungible Token), 암호 자산]의 일본 내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을 짚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제도 현황

가. 미국

■ [개요]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은 이른바 ‘크립토(Crypto) 3법’으로 불리는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클래리티법(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 감독 체계)」, 「반CBDC법안(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금지)」임.

- 2025년 7월 17일 미국 하원은 ‘크립토 3법’을 통과시켰는데, 각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법(GENIUS Act, 이하 지니어스법)」,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이하 클래리티법안)」, 「반CBDC 감사국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이하 반CBDC법안)」임.
- ‘크립토 3법’의 핵심 목적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여 달러의 글로벌 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음.⁸⁾

6) IMF(2025a), p. 9. 실제로 IMF and FSB(2024)는 거시경제적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미국 달러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IMF and FSB 2024, p. 2).

7) OECD(2025), p. 2.

8) The White House(2025),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검색일: 2026. 2. 15.).

표 1. 크립토(Crypto) 3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 경과 현황

구분	「지니어스법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클래리티법안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반CBDC법안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핵심 목적	·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 체계 정립	·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 및 관할 감독권 명확화	· 연준의 CBDC(디지털 화폐) 직간접 발행 및 운영 금지
주요 내용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허가제 도입 · 발행인 1:1 지급준비금 보유·준비자산 요건 명시 · 월별 공시 및 외부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 외국 발행인의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유통 자격 심사	· 디지털 자산 구분 (상품, 증권,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 상품은 CFTC, 투자계약자산은 SEC에서 관할 ·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구분 기준 도입 및 기준 충족 시 조건부 SEC 등록 혜택 부여	· 연준의 직간접 CBDC 발행 및 유통 금지 · 통화정책에 CBDC 활용 금지 · CBDC의 연구·개발 등 금지
입법 경과	· 의회 통과 후 대통령 서명(2025. 7. 18)	· 상원 심사 대기 중 (2025. 7. 17. 하원 통과)	· 상원 통과 (2026. 6. 22. 상원 통과)

자료: 미국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자산 3대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지니어스법] 「지니어스법(2025. 7. 18. 대통령 서명)」은 달러 기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정립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의 법안임.⁹⁾

- (법적 정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① 지급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하고, ② 고정된 금전적 가치(예: 1달러)로 상환·환매·재매입할 의무가 있으며, ③ 동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함.
 - 법정화폐, 예금 및 증권법상의 증권(security)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서 제외¹⁰⁾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함.
 -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사용 등에 대한 이자지급을 금지하여 기존 예금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기존의 자금중개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함.¹¹⁾
- (발행 요건·감독체계) 규제 관할을 연방과 주(州)로 이원화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발행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 이하 PPSI)만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PPSI 유형) ① 연방 감독당국이 허가한 부보예금기관¹²⁾의 자회사, ② 통화감독청(OCC) 인가를 받은 비은행 금융회사, ③ 부보예금기관의 자회사가 아니면서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 미만인 사업자(주정부 인가 획득 필수)
 - (해외 발행인 규제)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유통·판매·상장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¹³⁾을 충족한 경우 미국 내에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함.

9) United States Congress(2025), S.1582 - GENIUS Act. 119th Congress, 18 July.

10) 「지니어스법」 제17조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또는 상품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금융법(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 1922년 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 및 상품의 정의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할 것을 규정함.

11) 미국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TBAC)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예금 17조 8천억 달러 중 거래성 예금 약 6조 6천억 달러(2024년 4/4분기 기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이 허용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5), "Digital Money(TBAC Presentation to Treasury, 2Q 2025)"(검색일: 2026. 2. 15.).

12) 부보예금기관(IDI: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은 예금을 수취하고 대출을 실시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역할을 수행하며, 연방예금보험공사 또는 미국신용협동조합청으로부터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을 의미함.

- (지급준비금 및 준비자산 요건) 발행인은 발행잔액에 대해 항상 1:1 비율로 상환 가능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동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고, 준비자산은 발행인의 고유자산과 준비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미국 달러 현금, 연방준비은행 예치금,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국채 및 정부 MMF 등으로 제한¹⁴⁾
- (공시 의무) 발행인은 준비자산 금액과 구성 내역, 총발행량 등의 정보가 포함된 준비자산 보고서를 매달 공시 하고, 해당 정보는 회계법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CEO)·최고재무책임자(CFO)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업무 범위 제한)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상환·준비금 관리·개인 키 보관·관리 업무 등 법률상 명시되었거나 감독기관이 개별적으로 승인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 수행이 불가함.

■ [클래리티법안]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에 관한 법률인 「클래리티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각 법적 성격, 관할 부처 등을 명시하고 있음.¹⁵⁾

- (자산 분류)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암호기술로 보안이 확보된 분산원장(블록체인)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록된 가치의 전자적인 자산'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기능적 특성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규제 관할을 설정함 (표 2 참고).
- 디지털 자산은 투자계약에 따라 판매될 경우 '투자계약자산'으로 분류되어 SEC의 감독을 받도록 하지만, 발행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여 연간 최대 5,000만 달러의 디지털 자산 발행에 대해 SEC 등록 면제¹⁶⁾
- * ① 해당 네트워크가 4년 내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경우, ② 발행인이 기술 백서, 네트워크 운영 현황 등 공시 및 반기별로 업데이트할 경우, ③ 단일 투자자의 보유 지분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표 2. 클래리티법안의 디지털 자산 분류 및 감독 체계

구분	정의	관할권
① 디지털 상품 (Digital Commodity)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상에서 탈중앙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② 투자계약자산 (Investment Contract Asset)	증권법상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며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	증권거래위원회(SEC)
③ 허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지니어스법」에 따른 '허가된 발행인'이 발행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에 따른 관할 기관

주: * 디지털 자산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형태를 의미하며, 발행인 등 특정 주체의 토큰에 대한 소유권 비중 또는 프로토콜 변경 권한의 독점 등을 기준으로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판단함.

자료: United States Congress(2025), H.R.3633 -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119th Congress, 17 July.

- 13)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유통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해외 발행인의 국가의 규제체계가 「지니어스법」과 동등하다는 점을 SCRC(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한 재무부의 확인을 받을 것. ② 발행인이 OCC(통화감독청)에 등록할 것. ③ 미국 금융기관 내에 준비금을 보유할 것. ④ 미국정부(법원 또는 규제기관)의 '합법적 명령(lawful order)'에 따라 자사 스테이블코인의 동결·소각·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보유할 것. ⑤ 발행인의 소재 국가가 미국이 지정한 포괄적 경제제재 대상국이거나 자금세탁 주요 우려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4) 2025년 8월 기준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의 63%를 차지하는 테더(USDT)의 준비금에 비트코인이나 금 등과 같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 포함되어 있어, 「지니어스법」 전면 시행 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15) 「클래리티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2026년 1월 10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하원 통과안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Digital Asset Market Structure Draft(디지털 자산법)'를 공개했으나, 탈중앙화 발행 기준의 엄격화 등 제기된 쟁점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수정 심사 일정이 연기됨.
- 16) 증권성이 없는 디지털 상품은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CFTC의 감독하에 두고, 발행 시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SEC 규제 부담을 덜어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환경을 정비한 것으로 보임.

- (중개인 및 거래소 규제) 디지털 상품 거래업자는 CFTC에 등록해야 하며, 고객 자산 분리 보관, 공정 거래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시스템 유지, AML·KYC 및 기록 관리 프로그램 도입 의무를 준수해야 함.
-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DeFi 기술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 기여자에게 거래소·증개업·판매업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제를 도입함.

■ [반CBDC법안] 해당 법안은 연준¹⁷⁾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유통하는 것을 금지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026. 6. 상원 통과¹⁸⁾).¹⁹⁾

- (연준 CBDC 발행 및 운영 금지) 연방준비은행(FRB)의 디지털 화폐 직·간접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고,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는 디지털 화폐 시험·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디지털 화폐를 금융시장의 안정화 또는 통화정책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²⁰⁾
- (예외조항) 동 법안의 내용은 달러화로 표시되며, 개방형·무허가형·민간형(open, permissionless, and private) 구조로 현금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디지털 화폐(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
 - 동 법안의 CBDC는 ① 미국 통화 단위로 표시되고, ② 연준의 직접적인 부채로 간주되며, ③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디지털 화폐로 정의됨.

나. EU

■ [현행] 유럽 내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암호화폐 연계상품 보유 규모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비중이 높음.

- (스테이블코인) 2024년 말 기준 유럽에서 거래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규모는 약 3,340억 달러로, 전 세계 거래량의 약 21% 수준임(그림 3 참고).²¹⁾ 그러나 유로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규모는 약 3억 9,500만 유로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음.²²⁾
 -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추후 서술)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데, 크게 EMT(이머니 토큰)와 ART(자산참조토큰) 및 기타 자산(암호자산)으로 구분됨.
 - * EMT(E-money token): 자산의 가치가 유로화 등 단일 법정화폐에 연동
 - * ART(Asset-referenced token): 복수의 법정화폐 또는 실물 자산에 가치가 연동(예: 리브라 등)
 - * 기타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토큰을 뜻함. 다만 CBDC나 탈중앙화 금융(DeFi) 등은 제외
- (크립토 연계상품) 2024년 4/4분기 기준 유로 지역 투자자들이 보유한 크립토 연계 투자상품 규모는 약 170억

17)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및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등.

18) 「반CBDC법안」은 2026년 6월 상원이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주택법)」를 통과시키면서 함께 통과됨. 해당 주택법안의 내용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의 CBDC 발행 및 개발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반CBDC법안」은 상원에서 우회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음.

19) 트럼프 행정부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20) United States Congress(2025), H.R.1919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119th Congress, 17 July.

21) 동 수치는 USDT(테더), USDC(서클)를 합친 것임.

22) ECB(2025. 5.), “Just another crypto boom? Mind the blind spots”(검색일: 2026. 2. 12.).

유로이며, 이 중 유로 지역 금융 부문(financial sector)의 보유 규모는 34억 유로로 전체의 약 20% 수준임.²³⁾²⁴⁾

- ECB에 따르면 크립토 연계상품(Crypto-asset-related investment product)은 나스닥(Nasdaq) 등 일부 대형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크립토 연계 ETP(특정 크립토나 크립토 지수에 연동되는 규제권 내 금융상품)를 의미함. ECB는 ECB Securities Holding Statistics와 Bloomberg Finance L.P. 및 ECB calculation으로 크립토 연계상품 보유액을 산출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²⁵⁾

- (DLT 결제) 2024년 5~11월 동안 유로시스템 DLT 실험 결제 규모는 약 16억 유로임.²⁶⁾

그림 3.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지역별 거래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유럽(Europe)은 EU 회원국이 아니라 유럽 권역을 의미함.
자료: IMF(2025b).

■ [제도 개요] EU는 역내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MiCA 외에도 자금이체규정(TFR), 매매와 결제 분리 관련 규제 샌드박스(DLT Pilot), 디지털 운영 규범(DORA) 등을 제정하고 시행 중임.

- (MiCA: 총괄 규정) MiCA는 스테이블코인 등 기존 금융법 체계에는 없던 새로운 가상자산이 등장함에 따라 EU 차원에서 일관성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23년 제정됨.²⁷⁾ 동 규제는 주로 스테이블코인(EMT, ART) 및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는데, ① 공시(white paper), ② 인가 및 감독, ③ 발행 유형별 규제, ④ 이자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²⁸⁾

23) Ibid.

24) 크립토 연계 상품은 암호자산 연계상품 등으로도 표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원문 그대로 '크립토 연계 상품'이라고 하였음. 다만 크립토 연계 ETP가 어떤 상품인지 특정 짓지는 않았으며 그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품군을 판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5) ECB(2025. 5.), "Just another crypto boom? Mind the blind spots"(검색일: 2026. 2. 12.).

26) Ibid. 단, DLT 기반 결제 규모는 실제 거래된 것은 아니기에 디지털 자산 거래 규모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본문에 명시함.

27) MiCA는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약자로, 정식 법률명은 「Regulation (EU) 2023/1114」임. 2023년에 제정되었으며, 2024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임. EUR-Lex,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Text with EEA relevance)」(검색일: 2026. 2. 15.).

28) 단,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의 경우 예금으로 분류됨. MiCA에서 "예금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토큰화 예금은 MiCA가 아니라 일반 은행법의 규제를 적용받음.

- (TFR) EU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EU의 TFR(자금이체규정)은 FATF의 트래블 룰(Travel Rule)²⁹⁾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① EU 내 트래블 룰 의무화, ② 비수탁 지갑(Unhosted Wallet) 검증 강화 등을 명시함.³⁰⁾
- (DLT Pilot: 규제 샌드박스) EU의 기존 금융상품법인 'MiFID II'³¹⁾는 모든 거래를 중앙장부(CSD)에 기록하도록 하고, 증권사 등 중개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의 경우 탈중앙화, 직접 거래라는 특성상 이를 활용하여 증권 등을 발행할 때 동 법에 저촉됨. 따라서 규모의 제한을 두고 ① 거래와 결제 분리, ② 개인의 직접 거래 금지 등 MiFID II의 핵심 규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제외함.³²⁾³³⁾
 - 따라서 하나의 법인이 거래소와 결제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것(DLT TSS)과, 개인이 직접 거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함(단,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
- (DORA: 디지털 규범) EU는 금융 부문의 ICT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EU 차원에서 역내 금융기관들의 복원력 있는 디지털 운영을 위해 상세하면서도 포괄적인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2년 동 규제를 도입함.³⁴⁾ 동 규제의 주요 내용은 ① ICT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도입, ② 디지털 운영 탄력성 테스트(TLPT) 실시, ③ 제3자 제공업체(CTPP) 직접 규제 등임.

표 3. EU의 디지털 자산 관련 주요 규제의 내용

규제 형태	주요 내용
MiCA	· [공시] - 관리 당국의 확인 및 비기술적 요약(summary) 제시 의무 - 증권신고서가 아니라는 문구 포함,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 [인가/감독] - CASP 인가 취득 시 EU 역내 영업이 가능(서비스 제공) - 해당 인가를 통해 EU 전역 영업 가능(패스포트 권한 획득) - 사용자가 1,000만 명 이상 또는 일일 거래액이 2.5억 유로 이상인 토큰의 경우 해당 토큰은 'Significant Token'으로 분류하여 EBA(유럽은행감독청)가 직접 감독 (일반적인 토큰은 EU 각국 당국이 감독) · [발행 유형별] - ART: EU 역내 법인 설립, 자본금 요건(35만 유로 혹은 준비금의 2% 수준) 충족 - EMT: 은행, EMI(전자화폐기관)만 발행 가능 - 발행액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금 필요

29) FATF 권고안에는 송금을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경우 ① 필수적이고 정확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확보할 것, ② 해당 정보를 가상자산을 수취하는 사업자에게 전송할 것, ③ 정부 당국이 요구할 경우 해당 송수신 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정보를 전송하는 개념이 트래블 룰의 근거가 됨. FATF가 트래블 룰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기준 금액(1,000달러/유로) 이상 전송(기준 금액), 송금인 및 수취인 관련 정보(필수 정보) 등이 제시됨. FATF, pp 76-77.

30) TFR 조문에서는 "MiCA와 이 규정 사이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은 MiCA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동 규제가 MiCA와 함께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UR-Lex, 'Regulation (EU) 2023/11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Text with EEA relevance)'(검색일: 2026. 2. 18.).

31)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의 약자임. 모든 전통적인 금융상품(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는 동 법을 준수해야 함.

32)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DLT Pilot Regime'(검색일: 2026. 5. 3.).

33) EU에 따르면 동 파일럿 제도는 특정 DLT 시장 인프라가 EU의 금융 규제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ESMA와 금융 당국이 해당 파일럿 제도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고 경험을 쌓기 위함이라는 점,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통해 향후 EU 법률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도출하는 점 등의 목적을 지님. Regulation (EU) 2022/858 Recital 6(검색일: 2026. 4. 25.).

34) 'EU DORA(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Act, 디지털 운영 복원력 법)'는 EU 역내 금융 부문에서의 ICT 리스크 관리,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22년 제정됨. Regulation (EU) 2022/2554, 홈페이지(검색일: 2026. 3. 26.).

규제 형태	주요 내용
	- 기타 가상자산: white paper(화이트페이퍼)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 (이자 지급 금지) - 보유자에게 이자 지급 금지
TFR	· (트래블 룰 의무화) - CASP 간 이체 시 금액에 상관없이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전송하도록 의무화 · (비수탁 지갑 검증 강화) - CASP와 비수탁 지갑(개인 지갑) 간에 1,000유로를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CASP는 해당 지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식별 필요
DLT Pilot	· (예외 규정) DLT 상에서 발행 혹은 기록되는 증권에 한해서 기존 MiFID II의 규정(매매와 결제(청산) 분리, 중개인 관여 필수) 적용을 제외 · (규모 제한) 주식: 시총 5억 유로 미만, 채권: 발행량 10억 유로 미만
DORA	· (리스크 관리) - 금융사, CASP는 중대한 ICT 사고 발생 시 보고 타임라인 준수 -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버넌스 요구 · (TLPT 실시) - 3년마다 실제 해킹 공격을 가정한 TLPT를 실시(모의 훈련) * TLPT(Threat-Led Penetration Testing): 위협 주도 침투 테스트 · (CTPP 규제) - EU 당국이 직접 CTPP를 지정, 감독 가능 * IT 기업을 직접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음(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대상)

주: 2026년 5월 기준 각 법률의 주요 내용임.

자료: 각주 27, 30, 32-34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정리.

다. 영국

■ [제도 개요] 영국은 암호자산 관련 규정을 기존의 금융법 체계 안에서 운용하면서도 결제 등에서 일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형태로 디지털 자산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FSMA 2023) 영국 정부는 2023년 기존에 있던 금융법인 「FSMA(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안에 ‘지정 활동 체제(DAR)’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암호자산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 체제에서는 영국 재무부가 암호자산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지정 활동’으로 분류하면 FCA(금융행위감독청)가 해당 활동에 대한 규칙 제정, 감독 등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³⁵⁾ 비트코인 등 무담보 암호자산과 영국 거래소에 상장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동 체제의 규제대상임.³⁶⁾³⁷⁾³⁸⁾
 - 지정 활동 체제(DAR: Designated Activities Regime)는 금융상품이 아닌 금융 행위(공모·상장, 거래소 운영, 자산 보관 등)를 규제하는 것으로, 기존 「FSMA 2000」에 신설(Part 5A)됨.³⁹⁾
- (DSS: 규제 샌드박스) 전통적인 형태의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하고 결제하는 등의 과정에 DL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법의 규제(거래소-예탁결제원 분리)를 예외적으로 제외하는 실험적 성격의 공간으로서,

35)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검색일: 2026. 2. 16.).

36) Ibid.

37) 위의 FCA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기존 금융법의 규제하에 있기 때문에 지정 활동 체제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영국 재무부(2023)는 NFT와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를 쪼개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경우 증권이나 펀드로 간주함. 영국 재무부(2023), pp 18-21.

38)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FCA가 감독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영국 재무부가 판단하는 경우 영란은행의 규제(감독) 대상이 됨.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는 ① 준비금 비율(준비금의 최소 40%를 영란은행에 무이자 예금으로 예치), ② 개인 보유 한도 제한(2만 파운드) 등을 준수해야 함. Bank of England, “Regulatory regime for systemic payment systems using stablecoins and related service providers”(검색일: 2026. 2. 17.).

39) FCA(2024), pp 6-12.

BoE(영란은행)와 FCA가 공동으로 운영함(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법제화 전망).⁴⁰⁾

- (FCA 실무 규제) 시장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목적으로 트래블 룰, 금융홍보 규제(Financial Promotions Regime, 2023 시행)⁴¹⁾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디지털 자산법) 암호화폐, NFT 등을 '제3의 개인적 자산(third category of personal property)', 즉 법적인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함.⁴²⁾

라. 싱가포르

■ [제도 개요]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통합된 법 체계를 두지 않고, 각 자산의 경제적 성격 등을 감안하여 각각의 법, 가이드라인 등을 두어 규제함.

- 각 자산별 규제는 「지불서비스법(디지털 결제 토큰)」, 「증권선물법(ST)」,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스테이블 코인)」,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ST, 해외서비스 제공 사업자)」이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 [지불서비스법] 디지털 결제 토큰(비트코인, 암호화폐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서, 최근 개정안(2024년)을 통해 소비자 보호 조치가 강화됨.⁴³⁾

- (영업 라이선스) 1개월 거래액이 300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 지불기관(SPI: Standard Payment Institution), 그 이상의 경우는 주요 지불기관(MPI: Major Payment Institution) 라이선스가 필요함.
 - 주요 지불기관과 표준 지불기관 라이선스의 경우 거래 규모, E-Money 발행 한도, 최소 자본금, 보안 예치금, 자산 보호의무, 규제 대상 기업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주요 지불기관이 더 높은 법적 요구수준을 충족하도록 함. 디지털 토큰 사업자의 경우 초기에는 중소 사업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표준 지불기관 라이선스로 시작할 수 있으나, 사업 확장 속도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싱가포르 당국이 처음부터 주요 지불기관 라이선스를 요구하기도 함.
- (고객 자산 취급) 고객의 자산을 사업자 자산과 분리하여 신탁 계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자산을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디지털 결제 토큰을 보관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됨.
 - * 고객 자산의 대부분(90% 이상)을 오프라인(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함.
- (소비자 보호)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하는 광고,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홍보, 개인 투자자에게 디지털 결제 토큰 매매를 위한 신용 제공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등)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 트래블 룰(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 공유)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함.
- (기술위험 관리) 싱가포르 통화청의 '기술위험 가이드라인(TRM Guidelines: Technology Risk Management Guideline)'에 입각하여 해킹,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함.

40) Bank of England(2024. 9. 30.), "Bank of England and FCA joint approach to the Digital Securities Sandbox"(검색일: 2026. 2. 13.).

41) 금융홍보 규제는 암호자산 관련 프로모션, 광고는 반드시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하며,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하는 등 해당 디지털 자산 홍보 시에 지켜야 하는 실무 차원의 규제임.

42) Law Commission(2025. 12. 2.), "The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has received Royal Assent."

4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Payment Services Act 2019"(검색일: 2026. 5. 2.).

- ‘기술위험 가이드라인’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든 금융기관이 자사 IT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①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감독), ② 사이버 복원력(해킹 등의 피해복구 및 서비스 재개), ③ 제3자 위험 관리(외부 보안 서비스 등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④ 시스템 가용성 및 신뢰성(핵심 금융 서비스의 연간 누적 장애 시간 관리), ⑤ 데이터 무결성(접근 제어 등) 등을 규정함.

■ [증권선물법] ST 관련 규제로서 자산의 성격이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⁴⁴⁾

- (발행 규제) ST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싱가포르 통화청에 사업설명서를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함. 다만 ① 소액 발행(1년간 500만 싱가포르 달러 미만), ② 사적 모집(1년간 50인 미만에게 가입 권유), ③ 전문투자자(기관 투자자 또는 일정 자산 요건을 갖춘 적격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설명서 제출이 면제됨.
- (중개 및 라이선스) 해당 ST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 서비스(CMS)를 취득해야 하며, 거래소를 운영할 경우 해당 규모에 따라 공인 시장 운영자(AE) 또는 인정 시장 운영자(RMO) 인가를 받아야 함.

■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로 연동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로서 준비자산 요건, 상환 권리, 자본금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⁴⁵⁾

- (준비자산) 유통량의 100% 이상을 고유동성 자산인 현금, 정부 발행 채권 등으로 보유해야 하며, 해당 준비자산은 발행자의 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수탁기관에 예치해야 함.
- (상환 권리) 코인 보유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발행자는 5영업일 이내에 법정화폐(액면가)로 환전하여 지급해야 함.
- (자본금 요건) 최소 100만 싱가포르 달러(고정액)와 연간 운영비의 50%(변동액)를 계산하여 둘 중 더 큰 금액을 항상 최소 기본 자본금으로 유지해야 함.
- (이자지급 금지)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배당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 (공시 의무) 1개월마다 준비자산에 대한 외부 감사 관련 증명(증빙)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싱가포르 내에 거점을 두되, 해외 고객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2025. 6. 시행)되는 규제로서 해당 사업자는 재무 요건 등 싱가포르 통화청이 규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⁴⁶⁾⁴⁷⁾

- (인가 요건) 소재지 밖의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싱가포르 내에 실제적인 사업장(영업장)이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영진(집행 이사)을 최소한 1인 이상 두어야 함.
- (재무 요건) 최소 25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의 기본 자본금을 유지해야 함.

44)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검색일: 2026. 4. 16.).

45)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Finalises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검색일: 2026. 4. 27.).

4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검색일: 2026. 4. 17.).

47) 동 규제의 주된 목적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국제적인 자금 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음.

마. 한국

■ [추진 현황] 한국은 디지털 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단계별 입법을 추진 중인데, 2024년 7월부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금지를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칭)」이 추진 중임(2026년 2월 기준, 2단계 입법).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2021년 3월 개정)」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 체계로는 시세 조작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하에 제정됨.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및 보험 가입 의무, △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및 의심 행위에 대한 금융 당국 통보 의무, △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강화⁴⁸⁾
- 한편 현재의 법 체계하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평가도 존재함.
 - 2025년 국회에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안(민병덕, 이강일, 김재섭, 최보윤, 박상혁 의원 각 대표 발의)⁴⁹⁾과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규제 법안(안도걸, 김은혜, 김현정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발의됨.
- 한편 여당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TF)는 민주당 의원안 5개(민병덕·이강일·박상혁, 안도걸·김현정)에 대한 통합안 마련을 추진 중이며, 2026년 2월 말 TF 최종회의 이후 여당안을 확정할 예정임을 밝힘.⁵⁰⁾
 - 다만 여당TF는 △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51% 룰'),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당내 정책위원회 및 금융당국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단계 입법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임.

■ [전망]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및 기본적 규율 방향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 및 핵심 쟁점 사항(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됨.

- (통합안 진행 상황) 정부·여당은 스테이블코인과 비증권형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하나의 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단기간 내 쟁점 합의가 어렵다면 스테이블코인 법안만 분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⁵¹⁾
 - 여당TF는 5개 민주당 의원안에 포함된 △ 발행인 인가·등록제, △ 발행 공시 의무, △ 이용자 보호 강화, △ 거버넌스 및 감독 체계, △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등의 주요 규제 항목을 기본법에 담되 세부 내용은 추후 조율할 것으로 보임.⁵²⁾
- (발행인 인가·등록제) 가상자산 사업자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의 신고제에서 디지털 자산업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위험도와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로 구분하는 2단계의 진입규제를 도입할 예정임.
 - 디지털 자산업의 구체적인 기능별 분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 없으나, 민주당 의원안(민병덕·이강일·박상혁)

48) 법제처(20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검색일: 2026. 3. 5.).

49) 국민참여입법센터(2025), 「국회입법현황」(검색일: 2026. 2. 21.).

5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에 홈페이지, 「『정책위의장』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검색일: 2026. 2. 20.).

51)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통합안의 주요 골자가 되는 민주당의원안 5건 및 여당TF 회의 관련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2026년 2월 기준으로 정리함.

52)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차등」(2026. 1. 28.).

모두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 분류(매매, 중개, 자문, 일임 등)를 준용하여 9~10개로 분류하고 있음.

* 인가 대상으로 주로 거래소(매매·교환·중개) 및 수탁업(관리·보관) 등의 업종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최소 자기자본(인가·등록 요건),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세부적인 사항의 경우 의원안마다 규제가 다소 상이하여 향후 기본법 및 시행령의 귀추가 주목됨.
- (발행 공시 의무)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산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담은 백서(white paper)를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미기재·오류 등으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이는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제도와 유사한 접근으로, 발행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발행인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임.⁵³⁾
- (거버넌스 및 감독체계)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통화(한국은행)·외환(재정경제부)·금융 당국(금융위원회) 간 합의에 기반한 정책협의기구 ‘가상자산협의회(가칭)’⁵⁴⁾를 설치하도록 함.
 - 미국 「지니어스법」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Stablecoin Certification Review Committee)’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 원칙적으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또는 전원 서면 합의로 의결이 가능함.⁵⁵⁾
-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 도입, 유통 물량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 확보,⁵⁶⁾ 최소 자기자본 요건 50억 원 이상⁵⁷⁾ 등을 규정함.
 - 주요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성을 고유동성 안전자산 위주로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GENIUS Act)은 요구불예금, 국채(만기 93일 이내), RP(만기 7일 이내), 중앙은행 예금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발행액의 최대 50%까지 단기 국채(만기 3개월 이내) 및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함(개정 자금결제법).
- (주요 쟁점사항) △ 은행 주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의 제한, △ 내부통제 기준 등은 초안에 반영되지 않음.

3.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과 현황

■ 이하에서는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추진 및 이에 따른 디지털 자산 현황에 대해 살펴봄. 크게 디지털 자산 법제화 과정 및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에 해당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 주요 현황 및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함.

53) 신경희(2026), p. 23.

54) 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부여함.

55) United States Congress(2025), S.1582 - GENIUS Act. 119th Congress, 18 July.

56)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조치 중 하나로, 발행사는 고객에게 수취한 금액 전액을 자신의 자산과 분리해 외부 기관에 준비자산으로 보관해야 함. 허용 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 93일 미만 국채 및 지방채 등 고유동성 안전자산이며 비율은 2026년 6월 기준 정해지지 않음.

57)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상거래 대금지급 등 결제는 가능하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는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으로 해석됨.

가.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경과

■ [개관] 일본정부는 거래소 해킹 등을 계기로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왔는데, 최근에는 기시다 전 내각의 'Web 3.0 정책'을 통해 NFT 등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 지원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이에 본 절에서는 일본정부의 디지털 자산 규제와 일부 산업 육성 등 일련의 법제화에 대해 살펴봄.

- 일본의 디지털 자산 법제화 경과와 관련하여 본 절에서는 [표 4]의 틀에 따라 규제 정비 단계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주요 규제 대상 자산 및 주요 내용을 살펴봄.

표 4. 시기별 일본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정비 동향

시기별	해당 자산	주요 내용
투자자 보호 (~2020년)	암호자산, ST(ERTR)	· [암호자산] 거래소의 콜드월렛 비율 의무화(핫월렛 상한 5% 룰) · [ST/ERTR]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결제 시스템 안정화 (2021~23년)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예금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제 발행자, 공시/감사 의무, AML/트래블 룰, 준비자산 보전 의무, 중개자 제도 등을 규정 · [토큰화 예금] 스테이블코인과의 구별, 기술적 이전제어 규칙, 중개자 제도, 이용자 보호 등을 명시
규제 및 지원 병행 (2023년~)	암호자산, NFT	· [암호자산] 미실현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폐지 · [NFT]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

자료: 자자 정리.

■ [~2020년: 투자자 보호] 코인체크 해킹 사태 등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암호자산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증권형 토큰(ST)도 유동성이 높고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워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함.

- (암호자산) 2018년 코인체크(Coincheck) 해킹 사태⁵⁸⁾를 계기로, 암호자산(가상통화) 교환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콜드월렛(오프라인)에 의무적으로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⁵⁹⁾ 이에 2019년 일본정부는 「자금결제법(PSA)」을 개정하여 ① 고객 자산의 핫월렛(온라인) 보관 비율을 최대 5%까지만 인정하고, ② 핫월렛에서 관리하는 고객 자산과 같은 종류 및 수량의 이행보증 암호자산을 반드시 별도로 콜드월렛에 보관할 것을 의무화함.⁶⁰⁾⁶¹⁾
 - 교환업자가 핫월렛에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종류·수량의 자기자본(이행보증 암호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여 외부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충격이 자금불능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

58) 코인체크 이전에도 2014년 마운트곡스(Mt. Gox) 거래소 유출 사건이 있었지만 본 절에서는 당시 최대 규모의 해킹 사태로 평가되는 코인체크 사태 전후로 일본의 암호자산 관련 동향을 살펴봄.

59) 코인체크 사태는 교환업자(거래소)가 고객의 암호자산 중 핫월렛(온라인)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산이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어 발생함. 金融庁(2016), 「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p 4. 교환업자가 고객의 자산을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던 핫월렛에 두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인터넷 환경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에 고객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됨(암호자산 이전에 필요한 비밀 키(암호자산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전자서명 생성 데이터)를 콜드월렛에 보관).

60) E-Gov, 「暗号資産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검색일: 2026. 2. 24.).

61) 법제화 과정 중 쟁점 사항은 철저한 보안과 시장의 유동성 유지로, 보안을 위해 고객의 자산을 전부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면 암호자산 결제 및 송금 시 교환업자가 수동으로 오프라인 기기를 통해 서명을 해야 하므로 즉시 결제가 어려워짐. 따라서 이용자 편의 및 교환업자의 업무 원활화를 위해 핫월렛 보유 비율을 5%까지 인정함.

- 암호자산은 소득세법상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급여 등 일반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됨.
- (ST) 금융청은 부동산 신탁수익권 등이 블록체인상의 토큰(ST)으로 발행되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반 개인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함.⁶²⁾ 이에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FIEA)」을 개정하여 ST(ERTR)⁶³⁾를 제1항 유가증권(주식 등)과 동일한 위치로 격상시켰으며, 2023년에는 회계 기준 등 실무 지침도 마련함.⁶⁴⁾⁶⁵⁾
 - FIEA에서는 유동성 등에 따라 증권을 제1항 유가증권(주식, 국채, 사채 등)과 제2항 유가증권(신탁수익권, 사모펀드 지분 등)으로 구분함. 제1항 유가증권은 유동성 및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 높아 증권 발행 및 판매 시 공시⁶⁶⁾ 의무 등 감독을 받는 반면, 제2항 유가증권은 유동성이 낮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임.
 - 2023년 기업회계기준위원회(금융청 산하)가 ① 자산(DLT 기반 ST) 보유 시 발생 및 소멸 인식 시점, ② 기존 유가증권 회계 기준과의 차이 등을 규정함에 따라, ST 발행 기업들이 감사 등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한편 ST는 민법 및 상법상 기존의 유가증권과 동일한 지위를 지니며, 이에 기존의 주식 및 채권과 동일하게 과세됨. 매매차익은 신고 분리과세(20.315%)되며,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됨.

■ [2021~23년: 결제 시스템 안정화]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EPI'로 정의(「자금결제법」 소관)하고 발행자를 예금기관·신탁회사·자금업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토큰화 예금은 「금융상품거래법」이 아닌 「은행법」 관할하에 둬으로써 두 자산을 구분함(표 5 참고).

- (스테이블코인) 일본정부는 2022년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되어 발행되며, 발행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EPI: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으로 정의하고, ① 발행자 제한, ② 중개자 등록제, ③ 준비자산 보전 의무, ④ 공시 및 감사 의무, ⑤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함.⁶⁷⁾
 - 일본 금융청은 '디지털 머니 유사형'과 '암호자산형'으로 구분함. 디지털 머니 유사형은 법정화폐의 가치와 1:1로 연동(발행가격과 동일)되고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정의되어 자금결제 중심의 규제를 받지만, 암호자산형은 이와 달리 전자결제수단이 아니며 암호자산으로 분류됨.
 - 한편 '전자결제수단' 스테이블코인도 발행자에 따라 ① 예금취급금융기관형(은행), ② 자금이동업자형(자금이동업자), ③ 특정신탁수익권형(신탁회사), ④ 기타(①~③에 준하는 것으로 내각부령에서 규정하는 것) 등 네 가지로 구분됨.⁶⁸⁾

62) 일반적으로 일본의 부동산 조각 투자는 신탁수익권(제2항 유가증권)을 조각내어 판매하거나 투자하는 형태로 종이 계약서상 거래 시 제2항 유가증권 거래이지만, 블록체인상 거래가 될 경우 유동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청에서는 이를 제1항 유가증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제도권으로 편입시킴.

63) 일본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ST와 관련하여 '전자기록이전권리(ERTR)'라는 법률적 용어를 신설하였음. 그러나 실무에서는 ST가 자주 사용되는 만큼, 본 절에서는 'ST(ERTR)'로 표기함.

64) ASBJ, 「電子記録移転有価証券表示権利等の発行及び保有の会計処理及び開示に関する取扱い」(검색일: 2026. 2. 25.).

65) 그 밖에도 ST 등장과 더불어 일본의 대표 6대 금융사들이 2019년 '일본STO협회'를 설립하였는데, 주로 자율규제를 제정 및 감시, ST 시장 제도 정비(가이드라인 제공 등), 대정부 정책 제언 및 건의,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동 협회가 일본정부가 아닌 민간 자율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절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음. 日本STO協会, 「目的」(검색일: 2026. 2. 27.).

66) ST를 공모 형태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 자산운용사 등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금융청에 제출해야 함.

67) 金融庁(2022. 12. 26.), 「令和4年資金決済法等改正に係る政令・内閣府令案等の公表について」(검색일: 2026. 3. 11.).

68) 단, 일본정부는 그동안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특정신탁수익권 발행을 제외하고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음. 金融庁(2024. 11. 21.), 「第5回 金融審議会 資金決済制度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事務電話資料」, p. 12.

- 민법상 스테이블코인은 금전채권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며, 결제수단으로서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음. 다만 외화 스테이블코인(예: USDC)의 경우 보유(처분)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상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과세대상임.
- (토큰화 예금) 「자금결제법」에서 '은행법상의 예금 등은 전자결제수단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과 구별함(은행법 규제 적용). 일본 금융청은 토큰화 예금과 관련하여 ① 스테이블코인과의 구별, ② 이전 제어, ③ 중개자 제도, ④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함.⁶⁹⁾
- 원칙적으로 토큰화 예금은 일반적인 은행 예금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이자의 경우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 분리과세됨(이자 수취액의 20.315% 과세).

표 5.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주요 규정 내용

스테이블코인	· [발행자 제한] 은행, 자금이동업자, 신탁회사 등 3개 기관만 발행 가능 · [중개자 등록제] 코인 발행자와 이를 유통·보관하는 중개자 역할을 분리, 스테이블코인 매매, 교환, 보관 업무를 하려면 금융청에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로 정식 등록되어야 함. · [준비자산 보전의무]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쿄 법무국 등에 공탁(이행보증금) 또는 은행과 신탁/보전 계약을 체결 → 준비자산: 안전 자산(현금성 예금, 일본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 · [공시/감사 의무] 발행자와 중개자는 코인 이용자에게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설명해야 하며, 자산 분리 상황에 대해 회계사 등의 감사를 받아야 함. · [자금세탁방지/트래블 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 지갑으로 송금 제한, 스테이블코인 송금 시 송금인·수취인의 성명 등 신원 정보를 같이 전송
토큰화 예금	· [스테이블코인과의 구별] 자금결제법이 아닌 은행법 적용 · [이전 제어] 신원이 불명확한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행위 금지, 사전에 본인 확인(KYC)이 완료된 이용자의 지갑(쌍방)에만 토큰화 예금이 이전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이전 제어(Transfer Control) 장치를 네트워크에 탑재 · [중개자 제도] 은행법상 전자결제 등 대행업 또는 은행 대리업 인가 필요 · [이용자 보호] 예금보험제도 적용(원금 1,000만 엔 및 이자 보호), 중개자 자금 예치 금지(고객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 또는 지갑에 보관 금지)

자료: 金融庁(2022. 12. 26.), 「令和4年資金決済法等改正に係る政令・内閣府令案等の公表について」(검색일: 2026. 3. 11.)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023년~: 일부 규제 완화 등] 일본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규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한편으로는 Web3.0 정책 추진 등을 계기로 최근에는 미실현 이익 관련 세제 경감 등 일부 지원 정책도 병행 중임.

- (NFT) 일본암호자산 비즈니스협회(JCBA)는 2024년 최신 논의 동향을 반영한 NFT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① 도박 등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서비스 설계 요건, ② 이용자 보호(서비스 종료 관련 사전 고지), ③ 저작권 침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④ 해외 판매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⁷⁰⁾
- 동 비즈니스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NFT 관련 사업에 대한 진입 지원, 적절한 서비스 운영을 통한 이용 환경 제공 및 건전한 시장 육성 기반 조성 등임. 이는 NFT와 관련하여 보안, 크리에이터 및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무단 유통·권리침해 대응) 등과 같은 쟁점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함.⁷¹⁾

69) 金融庁(2022. 12. 26.), 「令和4年資金決済法等改正に係る政令・内閣府令案等の公表について」(검색일: 2026. 3. 11.).

70) JCBA(2024b. 8.), pp 10~14.

- NFT와 관련하여 일본 국세청 가이드라인(No. 1525-2)에 근거하여 거래 횟수 및 실질적 성격에 따라 과세가 부과되는데, ①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영리 목적의 반복 발행 또는 판매), ② 양도소득(단순 투자), ③ 기타 소득(임시 또는 우발적 소득)으로 분류됨.
- 한편 기시다(岸田) 전 내각 및 여당(자민당)은 2023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Web3.0⁷²⁾을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규제를 강화하던 기존 정책에서 일부 완화 병행 등 정책 전환을 표방하였음.⁷³⁾
- (법인세 인하) 기업이 보유한 암호자산 및 NFT의 미실현 이익(기말 평가이익)에 기존에는 30%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2023년 세제를 개편하여 기업이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계속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폐지하였음.⁷⁴⁾ 또한 2024년에는 타사 발행 자산이어도 지속 보유 목적의 경우 미실현 이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⁷⁵⁾

나. 주요 디지털 자산 현황

■ 이하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거래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디지털 자산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본 절에서 다루는 디지털 자산은 크게 1) 엔화 스테이블코인, 2) ST(ERTR), 3) 암호자산, 4) 기타(토큰화 예금, NFT) 등임.

- 본 절에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ST(ERTR), 토큰화 예금, NFT의 정의에 대해 [표 6]와 같이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살펴봄.

표 6. 일본의 주요 디지털 자산의 개념 정의

디지털 자산 분류	개념 정의
스테이블코인	· 법정통화의 가치와 연동된 가격으로 발행되며, 발행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상환을 약속한 것(또는 이에 준하는 것, 금융청)
ST(ERTR)	· 블록체인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표상되고 이전되는 유가증권 관련 권리 · 법률적 용어: 전자기록이전권리(유가증권으로 간주) **실무적으로는 'ST'를 주로 사용
토큰화 예금	· DLT를 접목하여 결제 기능이 확장된 예금(은행법상 예금으로 간주)
암호자산	· ① 대가를 변제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 가능한 것, ②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구입·매각 가능한 것, ③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전 가능한 것, ④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는 토큰이 아닌 것
NFT (Non-Fungible Token)	· 위조·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소비자청) · 거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고, 구매·매각·전매 가능

자료: 제2장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71) デジタル庁 Web3.0研究会(2022), 「Web3.0研究会報告書 ~Web3.0の健全な発展に向けて~,」 p. 13, pp. 16~19.

72) 특정 플랫폼 기업의 중앙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이 데이터와 디지털 기록을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탈중앙화)하는 것을 의미함.

73) 自由民主党(2023), 「Web3.0ホワイトペーパー~誰もがデジタル資産を活用する時代へ~,」 pp 1~4.

74) 自由民主党, 公明党(2022. 12. 16.), 「令和5年度税制改正大綱,」 pp 75~76.

75) 自由民主党, 公明党(2023. 12. 14.), 「令和6年度税制改正大綱,」 pp 72~73.

1) 엔화 스테이블코인

■ [현황]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예금취급 금융기관,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이렇게 3개 업종이 발행 허가를 받은 바 있음. 그러나 발행 주체에 따라 발전 양상이 상이한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동업자형 스테이블코인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탁형·은행형 스테이블코인은 실증 및 발행 준비 단계인 것으로 보임.⁷⁶⁾

- (자금이동업자형) 일본 판테크 기업 JPYC는 2025년 10월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6년 2월 16일 시점에서 누적 발행액은 약 13억 엔을 돌파함(월평균 약 +69%의 성장세).⁷⁷⁾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한도는 1일 100만 엔(1회 3,000엔 이상)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고 개인용 결제 등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임.
 - JPYC는 2025년 8월 금융청에 제2종 자금이동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라이선스의 특성상 1일 송금 한도는 100만 엔으로 제한되어 있음.
 - (신탁형) MUFG와 미즈비시UFJ신탁은행은 ‘프로그마 코인(Progmata Coin)’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유통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공동 검토에 착수⁷⁸⁾하였으며, 미즈비시UFJ신탁은행은 프로그마 및 JPYC와 공동으로 신탁형 JPYC 발행을 위한 검토도 시작하였음.⁷⁹⁾⁸⁰⁾
 - (은행형) 금융청은 신탁은행의 특정신탁수익권 발행을 제외하고는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⁸¹⁾ 은행들은 실제로 현 단계(2026년 2월 기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공동 검토 및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공동 발행을 준비 중임.⁸²⁾
 - 일례로 일본의 3대 은행(미즈호, 미즈이스미토모, 미즈비시UFJ)은 동일한 규격으로 은행 간 호환이 가능한 법인용 스테이블코인 틀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마’ 시스템을 도입함.⁸³⁾
- * 기업들이 서로 다른 은행 법인계좌를 사용하더라도 원활하게 결제할 수 있는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3개 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발행 구조는 은행들이 공동 위탁자가 되고, 미즈비시UFJ은행이 수탁자로서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임.

76) 예금취급금융기관은 은행, 특정신탁업자는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는 비은행 결제기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혹은 송금업자와 유사함.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기존의 디지털 화폐와 가장 유사하며 법적 성질은 예금 부채임.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고객 자산을 발행인의 자산과 절연시키는 형태로써 이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유동화증권과 유사한 특정신탁수익권의 형태임. 자금이동업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를 위해 이동 중인 자금(미달 채무, Outstanding Obligation)에 대한 채권 형태임.

77) JPYC(2026), 「日本円ステーブルコイン「JPYC」, シリーズB 1stクローズで総額17.8億円調達へ国内決済インフラとしての「実需」拡大へ」(검색일: 2026. 3. 25).

78) 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三菱UFJ信託銀行(2023. 9. 11.), 「グローバルに流通可能な「国産ステーブルコイン」発行に向けた金融機関横断の共同検討計画について」.

79) 三菱UFJ信託銀行, Progmata, JPYC(2023. 11. 28.), 「三菱UFJ信託銀行とProgmataおよびJPYCの協業による、「JPYC (信託型)」および国内外ステーブルコイン間の交換に関する共同検討開始について」.

80) 그 외에도 2024년에 三菱UFJ信託銀行, Progmata, STANAGE, Gincog가 Progmata Coin 기반으로 일본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결제 활용을 위한 공동 검토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三菱UFJ信託銀行, Progmata, STANAGE, Gincog(2024. 1. 31.), 「三菱UFJ信託銀行・Progmata・STANAGE・Gincogの協業による「国産ステーブルコイン」の貿易決済活用に向けた共同検討開始について」.

81) 金融庁(2024. 11. 21.), 「第5回 金融審議会 資金決済制度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事務局説明資料」, p. 12.

82) 일본 금융청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상용 발행 이전에 해결해야 할 다음의 세 가지 과제들에 대해 제시한 바 있음. ① 3대 은행이 요건을 정의하고 평가 기준을 책정, ② 서비스 설계에 맞는 규제 대응 및 실무 대응이 적법하면서도 적절하게 수행 가능할지 검증, ③ 국경 간 대규모 B2B 결제 등임. 三菱UFJ銀行 외(2025. 11. 7.), 「複数の銀行による共同でのステーブルコイン発行とクロスボーダー決済の高次元に係る実証実験が金融庁「FinTech 実証実験ハブ」の支援案件に採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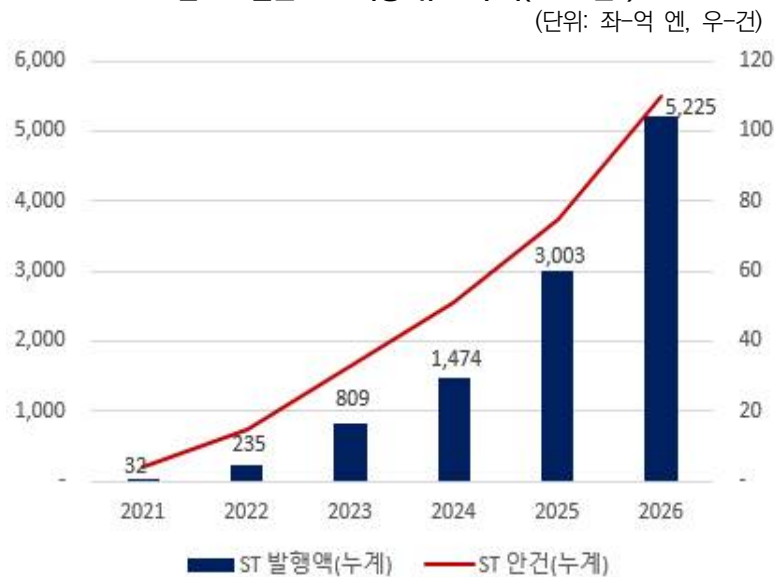
83) 「日本のステーブルコイン、3メガバンク相乗りで始動 ドル覇権に一石」(2026. 2. 2.).

2) ST(ERTR)

■ [현황] 일본 ST 시장은 2022년 이후 크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4년간 약 13배 가까이 성장함(발행액 기준).

- 2025년 말 기준 일본 국내 ST 발행 누적액은 약 3,003억 엔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5,225억 엔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최근 ST 발행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그림 4 참고).⁸⁴⁾
- 2025년 말 신규 ST 발행액은 약 1,529억 엔으로 전년대비 약 +230% 증가하였으며, 신규 상장은 전년대비 24건 증가(누적 기준 75건)함. 2026년에는 신규로 35건 정도가 상장 예정임(전년대비 +146%).

그림 4. 일본 ST 시장 규모 추이(2021년~)



주: 1) 누계액 기준임.

2) 2026년은 Progmatt의 전망치임.

자료: Progmatt(2026)에서 재인용.

■ [주요 경과] 일본의 ST는 처음부터 블록체인상에 발행되는 것과 기존의 전통적 금융자산의 토큰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ST의 경우 일본에서는 조기 발행시장 형성 등을 토대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 금융자산의 토큰화의 경우 노무라 등이 전통적 자산의 거래 및 권리 이전 관련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ST 발행시장이 성장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발행 플랫폼(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조기에 이루어져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게 된 점을 들고 있음.⁸⁵⁾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전에 금융기관들이 ‘Progmatt’과 ‘Ibet’ 등의 플랫폼을 이미 설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발행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84) Progmatt(2026. 1. 3.), 「「2026年、日本でも1兆円突破へ」—AI×オンチェーン金融の“地政学”を読み解く。」(검색일: 2026. 2. 25.).

85) 日本総研(2022. 9. 22.),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概要と市場拡大に向けた課題」, pp. 6~7.

- 일본의 ST 시장은 2021년부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약 70%가 부동산 ST이며 나머지 약 30%의 대부분은 채권(사채) ST임. 발행 누적액 약 3,000억 엔 중 약 2,600억 엔을 우량 부동산 관련 안전이 차지하는 등 현재 ST 발행 시장은 부동산 관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그림 5 참고).⁸⁶⁾
-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들이 자사 공모 형태로 재생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신규 분야에서 ST를 발행하고 있으며, 항공기 및 선박 등에 투자하는 ST를 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향후 투자자산의 다변화가 전망됨.
 - 일례로 대형 유통기업인 마루이(丸井) 그룹은 자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고 있음.⁸⁷⁾ 또한 필립 증권은 소설의 영화화 프로젝트에 ST를 도입하였는데, 영화 제작 위원회의 권리를 1구좌에 10만 엔 단위의 토큰으로 분할 판매함.⁸⁸⁾
 - 미츠이물산은 2026년도 내에 일본 최초로 항공기 및 선박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ST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츠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과 Progmart은 일본 최초로 토큰화 MMF 개발을 위해 기반 정비 협업을 시작함.⁸⁹⁾
- 일본 금융청은 2023년 6월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추진하는 글로벌 거래 파일럿인 'Project Guardian'에 옵저버로 참여한 바 있는데, 동 프로젝트에서 기존 전통적 금융자산(채권, 외환거래 및 자산 등)의 토큰화 및 국경 간 거래 등에 관한 파일럿 실험을 실시함.⁹⁰⁾
 - 동 프로젝트는 ① 토큰화된 싱가포르 달러, 싱가포르 국채 ② 토큰화된 엔화와 일본 국채, ③ 토큰화된 싱가포르 달러와 엔화 등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한 유동성 풀을 구축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성과로 토큰화된 엔화와 싱가포르 달러 예금을 포함한 실시간 교차 통화 거래 및 토큰화된 국채의 매매 관련 시뮬레이션 등이 있으며 DBS 은행(싱가포르), JP 모건(미국), SBI 디지털 애셋 홀딩스(일본)가 참여함.⁹¹⁾
 - * 이 중 실시간 교차 통화 거래와 관련하여, 참여 기관들은 토큰화 자산을 구성하여 기존 환거래 은행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 망을 통하지 않고도 스마트 컨트랙트⁹²⁾를 활용하여 국채와 외환이 거의 동시에 교환되는 DvP(Delivery Versus Payment, 증권-대금 동시 결제, 추후 서술)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밝힘.⁹³⁾
- 또한 노무라 증권 및 일본 대형은행들은 2026년 2월 금융청의 지원을 받아 자동이체로 거래되는 전통적 금융자산(국채, 주식, 투자신탁, 회사채 등)을 대상으로 증권회사 간 거래에 있어서 자동이체 계좌상 기록과 블록체인상의 데이터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 중임.⁹⁴⁾

86) 大和総研(2026. 1. 13.), 「大和の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ナビ 第1回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とは?」, p. 8.

87) 野村証券(2024), 「デジタルグリーンボンドの潮流と発展に向けた論点」, pp 123~125.

88) 「大作映画『宝島』を応援する「究極の推し活」映画デジタル証券を7月15日より販売!」(2025. 7. 17.).

89) 「三井物産、国内初の航空機・船舶のデジタル証券 拡大市場に個人マネー」(2026. 1. 12.); 三菱UFJ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株式会社三菱UFJモルガンスタンレー証券株式会社, 三菱UFJ信託銀行株式会社, Progmart(2025. 12. 4.), 「本邦初のトークン化投資信託の商品化に向けた基盤整備に関する協業開始」.

90) 金融庁(2023. 6. 26.), 「シンガポールMASのデジタル資産に関する官民連携イニシアチブ「Project Guardian」へのオブザーバー参加について」(검색일 2026. 5. 23.). 일본 금융청은 싱가포르의 금융관리국과 2017년 판테크에 관한 협력에 합의한 바 있으며 동 프로젝트 참여는 이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임. 동 프로젝트는 다음의 네 분야에서 진행됨. ① 오픈 상황에서 상호 운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② DeFi의 프로토콜 참여자를 선별하고 검증 가능한 자격 정보(Verifiable Credentials)를 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할 규제 금융기관 지정. ③ 자산의 토큰화, ④ 디지털 자산의 DeFi 프로토콜 적용 등임. MAS(2022), "First Industry Pilot for Digital Asset and Decentralised Finance Goes Live"(검색일: 2026.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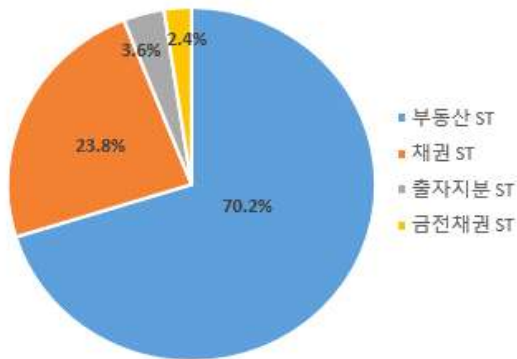
91) 野村資本市場研究所(2024), 「シンガポールで活発化する金融資産のトークン化—官民連携による資産トークン化プロジェクトを中心に—」, pp. 35~37.

92)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상에서 작동하며, 사전에 규정한 룰에 따라 거래 및 상태 갱신 등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93) JP Morgan(2022. 11.), "International DeFi: The Next Generation of Finance?" pp. 16-17.

94) NOMURA(2026. 2. 13.), 「ブロックチェーン×デジタルマネーによる伝統的資産の取引と権利帰属に係る実証実験が金融庁「FinTech実証実験ハブ」の支援案件に採択」.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여 자동이체 계좌 기록을 갱신하고 법률상 권리를 블록체인상으로 이전하는 것임.

그림 5. ST 자산의 구성 내역



주: 발행 누계 건수별 자산 현황임(2026년 2월 기준).
자료: Progmatt(2026).

표 7. 최근 ST 시장의 자산 다변화 사례

분야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디지털 채권 발행(마루이그룹)
영화 제작	· 영화 제작 권리 분할 판매(필립 증권)
물류 및 인프라	· 항공기 및 선박을 기초로 한 디지털 증권 발행 예정(미츠이물산)
증권	· 토큰화 MMF 개발(미츠비시UFJ 등)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제작 권리 분할 판매(TIS) ⁹⁵⁾
그린본드	· 그린본드(환경채)를 ST 형태로 발행 태양광 발전 설비 등에 투자(노무라홀딩스 등) ⁹⁶⁾

자료: 野村証券(2024), 「デジタルグリーンボンドの潮流と発展に向けた論点」, pp 123~125; 「大作映画『宝島』を応援する「究極の推し活」映画デジタル証券を7月15日より販売!」(2025. 7. 17.); 「三井物産 国内初の航空機・船舶のデジタル証券 拡大市場に個人マネー」(2026. 1. 12.); 三菱UFJ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株式会社三菱UFJモルガンスタンレー証券株式会社, 三菱UFJ信託銀行株式会社, Progmatt(2025. 12. 4.), 「本邦初のトークン化投資商品の商品化に向けた基盤整備に関する協業開始」; TIS(2025); 日本経済新聞(2026); NOMURA(2022).

■ [향후 과제] 한편 발행시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의 거래 실적이 표준화의 어려움, 제한적인 투자자 풀 등으로 인해 아직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은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유통시장의 경우 ST 전용 PTS(Proprietary Trading System, 사설 거래 시스템)인 ODX⁹⁷⁾의 'START'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ODX에 따르면 2023년 말 부동산 2개 종목(Kenedix, Ichigo)에서 시작해서 2026년 1월 기준 7개의 부동산 ST가 거래 중이며, 시가 총액은 약 234억 엔임(그림 6, 그림 7 참고).⁹⁸⁾
- 다만 거래 규모를 보면 2025년 이후에도 월평균 약 150만~230만 엔(최대 약 369만 엔) 선으로 유동성이 낮음.
- 발행시장과는 달리 유통시장에서 거래 종목도 한정되어 있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① 표준화 요건 충족의 어려움, ② 참여 가능한 투자자의 제약 등을 들 수 있음.
 - (표준화) 증권회사 간 종목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증권사, 은행, 신탁은행, 플랫폼머 등이 종목에 대한 합의를 통해 표준화를 구축해야 함(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상품의 금융기관 간 거래에는 기술 표준화 등이 필요).⁹⁹⁾
 - (투자자) ODX START에 공개된 투자자 유의사항에는 ① 특정 투자자 외에는 서비스 제공 불가, ② 증권회사 별로 주문 중개가 가능한 종목이 달라질 가능성 존재, ③ 유가증권과는 다른 유동성 리스크 존재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거래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가 제한적일 수 있음.¹⁰⁰⁾

95) TIS(2025. 2. 28.), 「TISとクエストリー、業務提携契約を締結し、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を活用したアニメ映画製作の資金調達を実施へ」(검색일: 2026. 3. 22.).

96) NOMURA(2022. 2. 14.),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を活用した「グリーン・デジタル・トラック・ボンド」の発行に向けた検討について」.

97) ODX(Osaka Digital Exchange,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는 2021년 SBI홀딩스, 미츠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 노무라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설거래시스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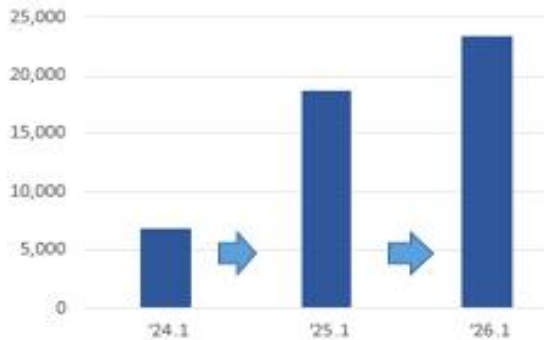
98) ODX ST, 「銘柄一覧」(검색일: 2026. 2. 28.); ODX(2026. 1. 6.), 「START 月次レポート 2026年1月」. 현재 ODX 'START' 플랫폼에서 거래 중인 ST는 주로 도쿄, 나고야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 소재 부동산을 자산으로 함. 종목들의 기준가격은 2026년 3월 2일 기준 약 9만 4,000~10만 5,000엔 선에서 형성되어 있음.

99)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流通市場「START」, 開業3カ月の現状と今後——時価総額60億円から2年で1000億円を狙う: 社長CEO」(2024. 4. 15.).

100) ODX ST, 「投資家の皆様へ: 手数料およびリスク等に関するご注意事項」, 「当社START市場の取扱銘柄についてのご注意事項」(검색일: 2026. 3. 2.).

그림 6. START 시가 총액 추이(연도별)

(단위: 백만 엔)



주: 각 연도 1월 말 기준 시가 총액임.

자료: ODX START 월간 데이터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7. START 유통 종목 수 및 일일평균 거래금액 추이

(단위: 좌-엔, 우-건)



주: START에 상장된 ST의 일일평균 거래금액임.

자료: ODX START 월간 데이터 토대로 저자 작성.

3) 암호자산

■ [현황] 일본에서는 암호자산 관련 거래 계좌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암호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 기준으로 2026년 3월 3일 등록된 암호자산거래업자(1종 자금이동업자)는 총 32개사이며, 2026년 1월 기준 현물 거래금액은 약 1조 5,400억 엔 수준임(그림 8 참고). 또한 거래 계좌 수는 2026년 1월 기준 약 900만 개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¹⁰¹⁾
 - 또한 이용자들의 예탁금 잔액은 2026년 1월 기준 약 3조 7천억 엔으로, 2024년 1월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함.
-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 보유자의 약 70%가 연간 수입 700만 엔 미만의 소득층이고, 개인계좌의 자산 금액이 10만 엔 미만인 계좌가 전체의 약 80%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개인의 암호자산 보유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함.¹⁰²⁾

그림 8. 일본의 암호자산 거래량 추이

(단위: 좌-백만 엔, 우-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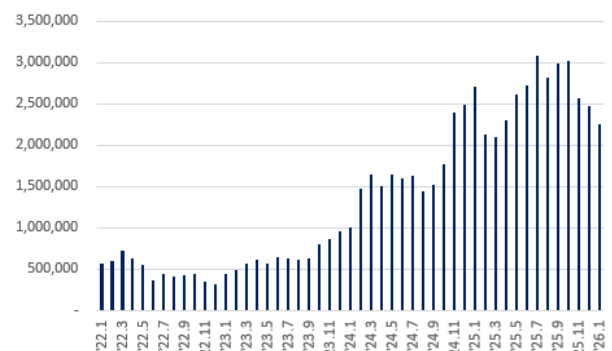


주: 계좌 수는 현재 가동 중인 계좌 수를 뜻하며, 거래는 현물거래임.

자료: JVCEA 월간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림 9. 일본의 비트코인 이용자 보유 현황 추이

(단위: 백만 엔)



자료: JVCEA 월간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101) JVCEA, 「Statistics information」(검색일: 2026. 3. 2.).

102) 金融庁(2025. 12. 12.), 「金融審議会 暗号資産制度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 p. 2. 금융청의 투자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투자 경험이 있는 일본 국내 개인 투자자의 7.3%가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환증거금 거래나 회사채 거래보다 높은 수치임.

■ [향후 과제] 다만 개인의 암호자산 활용 경향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일본 금융청은 건전한 암호자산 거래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래환경 정비 및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한편 암호자산이 투자 대상으로서 주목받는 가운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 등 암호자산을 둘러싼 일련의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을 제기함.¹⁰³⁾
- 금융청이 제시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① 정보의 비대칭, ② 사기적 권유 및 미등록 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 ③ 가격형성 및 거래의 불공정성, ④ 해킹·유출 등임(표 8 참고).

표 8. 암호자산 관련 금융청의 문제의식 및 주요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정보의 비대칭	· 암호자산 발행 시 제공되는 설명자료(white paper) 등의 기재 내용의 불명확함 (정보 제공은 자율규제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움) · 종목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올바른 정보에 근거한 거래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 제기
사기적 권유, 미등록 업자	· 투자 세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금전 사기 취득 행위 · 미등록 업자(해외소재 사업자, 암호자산 교환업 미등록자)의 암호자산 거래 권유 → 익명성을 이용한 부당행위 등
가격형성 및 거래의 불공정성	· 암호자산과 관련된 내부자 거래를 포함한 사기·시장남용의 가능성 ¹⁰⁴⁾
해킹, 유출	· 암호자산 교환업자가 이용자 자산의 유출 리스크에 관하여 적절한 관리 및 기술 진전에 따른 리스크, 제도 등의 지속적인 검토 필요

자료: 金融庁(2025), pp 4-5를 토대로 저자 정리.

4) 기타(토큰화 예금, NFT)

■ [토큰화 예금] 은행들이 소매결제, 대금 정산, 요금 납부 등 소비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토큰화 예금을 도입하거나 실증을 시도하고 있음.

- (인프라) DeCurret DCP가 운영하는 플랫폼(DCJPY 네트워크)에서 토큰화 예금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은 ‘비즈니스 존’과 ‘파이낸셜 존’ 등 2개의 분리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구성됨(그림 10 참고).¹⁰⁵⁾
 - 비즈니스 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이행하는 곳으로, ① 상품 및 서비스와 토큰화 예금의 결합, ② 독자적 성격의 자산 발행, ③ 거래 관련 업무 자동화 등이 가능함.
 - 파이낸셜 존: 은행 중심의 금융 비즈니스 영역을 담당하며, 토큰화 예금의 발행 및 잔액 기록을 담당함.
- (적용 사례) 2024년 GMO 아오조라 은행이 최초로 토큰화 예금을 발행한 이후 은행들의 토큰화 예금 발행을 위한 노력이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토큰화 예금 적용 분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표 9 참고).
 - 일례로 2025년 유우초 은행 등은 월세 지급을 목적으로 한 토큰화 예금을 2026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ST 실증도 이루어지고 있음.¹⁰⁶⁾

103) 金融庁(2025. 12. 12.), 「金融審議会 暗号資産制度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 p. 3.

104) 한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에서 부당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105) Decurret, 「Amic Signとは?」(검색일: 2026. 3. 25.).

106) 「ゆうちょ銀 貯金をデジタル通貨に来年度、口座にも付け 証券決済速く」(2025. 9. 1.); SBI新性銀行(2025. 12. 26.), 「国内初のトークン化預金による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決済の実行検証に関する 協業開始について」.

그림 10. DCJPY 플랫폼 구성 방식



자료: Decurret 홈페이지(검색일 2026. 3. 25.); ODX ST, 「銘柄一覧」(검색일 2026. 2. 28.); ODX(2026. 1. 6.), 「START 月次レポート2026年1月」.

표 9. 토큰화 예금 관련 일부 사례

구분	주요 내용
소매 결제	· 디지털 지역 통화 서비스로 개시, 지자체 포인트 사업, 소매 결제 등 ¹⁰⁷⁾ (홋코쿠은행, '도치츠키')
B2B 결제	· 유통업계 B2B 거래에 토큰화 예금 도입 대금 정산의 완전 자동화 추진 (일본체인스토어협회) ¹⁰⁸⁾
B2C 결제 유연화	· 정해진 기간 내에 월세, 가스 요금 등의 납부를 사용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변경, 지정 ¹⁰⁹⁾ (유우초 은행 등)

주: 현재 실증 단계인 사례도 포함.

자료: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流通市場「START」, 開業3カ月の現状と今後——時価総額60億円から2年で1000億円を狙う: 社長CEO」(2024. 4. 15.); ODX ST, 「投資家の皆様へ: 手数料およびリスク等に関するご注意事項」, 「当社START市場の取扱銘柄についてのご注意事項」(검색일 2026. 3. 2.); JVCEA, 「Statistics information」(검색일 2026. 3. 2.); 金融庁(2025. 12. 12.), 「金融審議会 暗号資産制度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 p. 2 내용 정리.

■ [NFT] 최근 NFT를 활용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참여 주체도 기업 외에 정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본 디지털청은 NFT 등의 활성화가 콘텐츠 산업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고 전망한 바 있음.¹¹⁰⁾
- 기존에 NFT는 주로 게임·아트 등 디지털 콘텐츠에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티켓, 도메인 등으로도 분야가 확장¹¹¹⁾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NFT를 활용하는 등 시장 참여자들이 확대되는 추세임(표 10 참고).
- 특히 큐슈전력의 경우 암호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카드 거래 형태로 NFT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음.¹¹²⁾ 또한 미츠이스미토모 카드 등은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시작¹¹³⁾하는 등 사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제고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107) 「【北國銀行】デジタル地域通貨サービス「トチツカ」登録者数10万人突破!」(2026. 3. 27.).

108) 「店舗でのトークン化預金「DCJPY」の利用について検閲開始 (JACDS/ディーカレットDCP)」(2026. 3. 30.).

109) 「ゆうちょ銀 貯金をデジタル通貨に来年度、口座にも付け 証券決済速く」(2025. 9. 1.).

110) デジタル庁 Web3.0研究会(2022), p. 7.

111)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2022. 6. 23.), 「NFTの動向整理」.

112) 九州電力(2025a. 6. 10.), 「SBINFTと九州電力はアートNFT販売領域での提携を開始します」.

113) SBINFT株式会社, CCCMK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三井住友カード株式会社(2025. 9. 24.), 「NFTマーケットプレイス「SBINFT Market」でVポイントサービスを開始」.

표 10. 일본 NFT 최근 일부 사례

활용 분야	주요 내용
항공·철도	· [JAL] 국내선의 기내에서 배포하여 호평을 얻은 지역 사회의 스티커를 모티브로 NFT를 발행, 판매¹¹⁴⁾ · [JR 큐슈] 자체 NFT 플랫폼을 구축하여 'JR 큐슈 플랫폼' 프로젝트 실시 / 교통, 숙박시설 등과 연계¹¹⁵⁾
게임	· [SQUARE ENIX] 약 1만 개 이상의 고유 캐릭터 NFT를 판매하는 NFT 프로젝트를 실시 / 이더리움으로 거래¹¹⁶⁾
정부·지자체·관광	· [JNTO] 엑스포를 테마로 한 'welcome NFT' 배포¹¹⁷⁾ · [치바시·Pacific Consultants] 치바시 동물공원의 동물이 NFT로 등장하는 특별 사이트 운영¹¹⁸⁾ · [이즈모시·미츠비시] 디지털월렛 NFT를 활용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NFT의 유효성을 검증¹¹⁹⁾ → 관광객 데이터를 수집하여 여행 관련 흥미 등을 검증
전력	· [큐슈전력] 아트 NFT로 디지털 아트 플랫폼 작품 판매, 신용카드 결제 가능¹²⁰⁾
금융	· [미츠이스미토모 카드 등] NFT 사이트에서 V포인트로 구입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실시¹²¹⁾

주: 발행된 것 외에도 현재 실증 실험 중인 사례들도 포함됨

자료: JAL(2023); JR九州(2023); PR TIMES(2023); JNTO(2025); Pacific Consultants(2025); 三菱総合研究所(2025); 九州電力(2025); 三井住友カード(2025)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 최근 동향

■ 이하에서는 2025년 이후 가장 최근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논의 및 기술 발전 동향을 크게 ① 「자금결제법」 개정, ② 암호자산 관련 제도 재검토, ③ DvP(ST 매매시 증권·대금 동시 결제) 결제 리스크 해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

■ [법 개정] 일본정부는 2025년 「자금결제법(PSA)」을 개정하여 암호자산 국내보유명령, 스테이블코인 보전자산의 유연화, 암호자산 중개업 신설 등의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디지털화 진전에 대응하여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함과 동시에 자본 유출 등의 리스크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임.¹²²⁾

- (국내보유명령) 암호자산의 현물만을 취급하는 암호자산 교환업자 및 스테이블코인 거래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 일본 국내 이용자의 자산 반환을 위해 자산의 국내보유명령을 낼 수 있도록 함(자산의 국외유출 방지).¹²³⁾

○ 해당 규정은 앞서 제기된 암호자산의 해킹 또는 유출 우려에 대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114) JAL(2023. 7. 20.), 「JAL は「TODOFUKEN NFTコレクション」を通じて、デジタル上での新たなつながりを提供します」.

115) JR九州(2023. 5. 9.), 「鉄道業界初! NFTプラットフォームを備えた「JR九州NFT」プロジェクト、始動!!」.

116) 「Kyuzanが共同開発する、スクウェア・エニックス初のNFTコレクティブルアートプロジェクト『SYMBIOGENESIS』、2023年12月21日に第一章リリース!」(2023. 12. 27.).

117) JNTO(2025. 4. 25.), 「万博テーマ×観光体験を水墨画のNFTアートで世界に発信(第2弾) ~万博をテーマに旅をするwelcome NFT を4月25日より配布開始~」.

118) Pacific Consultants(2025. 6. 23.), 「【公共インフラ等地域資源の3D・NFT事業】千葉市動物公園NFTコレクションの特設サイトを公開」.

119) 三菱総合研究所(2025. 4. 24.), 「三菱総合研究所、出雲市と共同でNFTを活用した観光振興のフィールド実験を実施」.

120) 九州電力(2025b. 6. 10.), 「SBINFTと九州電力はアートNFT販売領域での提携を開始します - デジタルアート市場の活性化と発展に貢献し、新たな体験を創出する実証を開始 - 」.

121) SBINFT株式会社・CCCMK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三井住友カード株式会社(2025. 9. 24.), 「NFTマーケットプレイス「SBINFT Market」でVポイントサービスを開始」.

122) 金融庁(2025. 3.),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説明資料」.

123) FTX 파산 당시 암호자산의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업자들의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상 국내보유명령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현물만 취급하는 업자의 경우 「자금결제법」에 국내보유명령 규정이 없어서 국외유출 방지 장치가 부족했다는 점이 규정 도입의 주된 배경임. 국내보유를 해야 하는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개정 예정임.

- (준비자산 유연화) 신탁은행이 발행하는 특정신탁수익권(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발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불예금으로 관리해야 하였으나 발행액의 50%를 상한으로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국채 또는 정기에금으로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투자자의 자산이 신탁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발행사의 도산 위험과 분리됨. 따라서 국채 등 우량 자산을 일정 비율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여 발행자의 수익성도 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¹²⁴⁾
- (중개업 신설)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과 이용자 사이에서 매매 및 교환 등 매개만을 하는 자를 위한 서비스 등록제 중개업을 신설함. 중개업자는 암호자산 교환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광고 규제 등을 적용받지만, 이용자의 자산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적 규제는 없음.
 - 구체적으로는 ① 등록제 적용, ② 특정 사업자를 위한 소속제 도입, ③ 이용자에 대한 설명 의무 및 광고 규제 적용, ④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에도 적용 등임.

■ [암호자산 관련 제도 재검토] 또한 일본정부는 암호자산의 「금융상품거래법」 이관 및 분리과세 적용, 투자신탁 대상으로 신규 추가(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전제)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내에서 투자대상으로서 암호자산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배경) 2025년 10월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이유로 암호자산이 단순한 결제 및 송금 수단에 그치지 않고 투자 대상으로 이용·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들었음.¹²⁵⁾
- (규제 이관) 금융청은 암호자산의 소관 법령을 기존의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2026년 연내 통과 전망) 현재 최고 55%인 암호자산 거래 소득세율이 주식·펀드와 같은 20% 분리과세로 전환될 전망이다.¹²⁶⁾¹²⁷⁾
 - 현재는 암호자산 거래 관련 소득이 ‘잡소득’으로서 타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액에 따라 최고 55% 세율이 부과되었으나, 법안 통과 시 타 소득과 구별하여 계산하는 신고분리과세 형태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정률과세 20%가 부과될 예정임(2026년 4월 10일 국회 제출).
- (투자신탁법 개정)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을 정하는 특정 자산에 암호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금융청은 2028년까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임.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운용사가 암호자산이 포함된 투자신탁을 조성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 금,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ETF와 마찬가지로 암호자산에 투자 및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개인 투자자의 암호자산 투자가 용이¹²⁸⁾해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교환업자의 외부 유출 대책 강화(「금융상품거래법」 개정), 신탁은행의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등 운용상 리스크 보완장치 등을 마련할 예정임.

124) 금융청의 개정안 설명자료에는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관련하여 일정 신용등급을 보유한 우량 회사채 등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즉시 환금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버퍼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25) 金融庁(2025. 12. 12.), 「金融審議会 暗号資産制度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 p. 2.

126) 「仮想通貨の税率が最高55%から20%に 投資先として存在感アップ」(2025. 12. 29.).

127) 그 외에도 투자손실 이월이 기존에는 불가하였으나 최대 3년까지 이월 가능하게 되는 점 등도 세제 개정 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제 개정은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128) 투자자들이 그동안 암호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비밀 키를 관리하는 월렛을 마련해야 하는 등 주식에 비해 투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지만, 향후 「투자신탁법」 개정 시 개인투자자의 암호자산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노무라자산운용, SBI 글로벌자산운용 등 운용사들도 암호자산 ETF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 [ST 결제 리스크 해소] 토큰화 예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DvP(증권-대금 동시결제)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발행 검증이 완료되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 중임.

- ST는 DLT 방식을 기반으로 한 온체인(On-Chain)에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 및 증권 양도가 이루어지는데, 기존 은행망(오프체인) 방식의 경우 결제 기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제약(운영 시간 등)으로 인해 즉시 결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에 DvP(증권-대금 동시결제)* 시스템이 필요함.¹²⁹⁾

○ 일본은행과 ECB(유럽중앙은행)가 2018년 실시한 'Project Stella'는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하여 ST(증권)와 자금(디지털 통화) 간 DvP 결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바 있음.¹³⁰⁾

* DvP(Delivery-versus-Payment, 증권-대금 동시결제): 일본은행은 DvP를 “증권의 인도(Delivery)와 대금의 지급(Payment)이 상호 간에 조건을 부여하여 한쪽이 발생(이행)하지 않는 한 다른 상대방도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¹³¹⁾

- 그동안 유통시장에서는 DvP가 구축되지 않아 증권회사 간 결제 시 ST와 자금 교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ST 인도와 자금 납입 사이에 시차 발생)이 발생함. 이 경우 보통 ST를 먼저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ST를 인도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나 만약 결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래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혹은 파산하게 될 경우 원금 리스크에 노출됨.

- 2025년 8월 미츠이스미토모은행, Progmatt 등을 중심으로 ST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DvP 결제 관련 실증 프로젝트를 시작¹³²⁾했으며, 2026년 4월 SBI 저축은행 등이 DeCurret DCP가 발행한 ST 및 토큰화 예금인 DCJPY를 활용하여 DvP 결제 검증을 완료함.¹³³⁾

4.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 [제도 개관] 일본의 디지털 자산 관련 신규 법안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자산별 특징에 주목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9) JPX(2024. 11. 1.), 「CBDC 포럼 WG4 디지털証券의事例紹介・DVP決済の検討」, p. 14.

130) ECB, BANK OF JAPAN(2018. 3.), 「Project Stella 日本銀行・欧州中央銀行による分散型台帳技術に関する共同調査 ― 分散型台帳技術によるDvP決済の実現 ―」, pp. 1~2, p. 5.

131) 이는 자금(혹은 증권)을 인도했음에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장치임. 日本銀行, 「DVPとは何ですか?」(검색일: 2026. 3. 2.).

132) 株式会社三井住友銀行, 大和証券株式会社, 株式会社SBI証券, SBI R3 Japan 株式会社, 大阪デジタルエクスチェンジ株式会社, 株式会社BOOSTRY, Progmatt Inc, 株式会社Datachain(2025. 8. 22.),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セカンダリーマーケット(二次流通市場)取引におけるステーブルコインを活用したDvP決済に係る実証プロジェクト開始」. 다만, 동 실증 프로젝트의 결과는 2026년 4월 기준 아직 공개되지 않음.

133) 株式会社SBI証券, 大和証券株式会社, 株式会社SBI新生銀行, 株式会社BOOSTRY, 大阪デジタルエクスチェンジ株式会社, 株式会社ディーカレットDCP(2026. 4. 24.), 「国内初のトークン化預金による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決済の実行検証の完了のお知らせ」(검색일: 2026. 5. 23.). SBI 증권은 동 검증 결과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ST의 DvP 결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발표함. 다만 검증 결과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스템과 DCJPY 네트워크의 데이터 연계 및 결제 호환과 증권사-은행의 기존 시스템과 시장 인프라와의 접속, 회계-자금관리-관련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 운용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됨.

- 일본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은행법」의 틀 내에서 각 자산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해당되는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NFT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 11 참고).
- 지불 수단(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 투자 수단(ST)은 「금융상품거래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의 디지털 자산 제도 운영 방식은 영국(기존 법 체계 활용)과 싱가포르(자산별 적용)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혼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표 11. 주요국의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비교

	법률 체계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예외 규정
미국	· 감독 체계 등 세 가지 법률로 구분	· 지니어스법에서 규정 · 발행 요건, 감독 체계, 공시 의무 등 · 발행인의 업무 제한	· 클래리티법안에서 규정 · 디지털 상품, 투자계약 자산, 스테이블코인 등 세 가지로 구분	· 반CBDC법의 내용은 개방형, 무허가형, 민간형 스테이블코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EU	· MiCA(총괄) 외에 TFR(자금이체규정), DLT Pilot, DORA 등 네 가지로 구성	· MiCA에서 규정 · ART, EMT로 구분 (발행 유형별 요건 명시)	· DORA에서 리스크 관리, 해킹 모의훈련, CTPP 등을 규정	· DLT Pilot (DLT 상의 증권에 한해 매매와 결제 분리 적용 규정을 제외)
영국	· 기존 금융법(FSMA 2023) 틀 내에서 규정 · 디지털 자산법, 실무 규제 등은 별도	· FSMA 2023의 DAR 감독 대상(결제용)	· 무담보 암호자산은 DAR 감독 대상 · 암호화폐, NFT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	· DSS (DLT 기술 적용을 위해 매매-결제 분리 등 금융법 규제 적용 제외)
싱가포르	· 자산별로 각각의 법 또는 가이드라인 규제	·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 · 준비자산 요건 등	· 지불서비스법(디지털 결제 토큰 등) · 증권선물법(ST)	-
한국	· 가상자산 이용자법, 디지털 자산 기본법	· 디지털 자산 기본법(통합안 추진 중) · 스테이블코인 법안만 별도 추진 가능성 존재		-
일본	· 자산의 기능에 따라 자금결제법, 은행법, 금융상품거래법, 가이드라인으로 구분	· 자금결제법 소관 · 예금취급금융기관형, 자금이동업자형, 특정 신탁수익권형으로 구분 · 신탁형의 경우 보전자산 규정을 완화(50% 상한)	· 금융상품거래법(ST) · 은행법(토큰화 예금) · 자금결제법(암호자산) · 가이드라인(NFT)	-

자료: 제2장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예금] 토큰화 예금은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음. 또한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금이동업자(핀테크 기업) 위주로 발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도 금융청의 지원 및 보전자산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서 엔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 모두 제도는 정비되어 있으나, 이미 실용화 단계에 돌입한 토큰화 예금과는 달리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기(자금이동업자형) 단계와 상용화 전 단계(은행형, 신탁형)가 혼재하는 등 발전 속도에 차이를 보임.

- 이는 토큰화 예금의 경우 기존 「은행법」의 체계 내에서 예금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도입 및 운영이 비교적 수월한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자금결제법」상 전자지불수단으로서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충족하면서 발행 및 유통을 하기에 쉽지 않다는 점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신중한 태도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일본 금융청은 2025년 11월에는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를 지원하였으며, 2026년 1월에는 신탁형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향후 테스트 완료 후 정식으로 상용화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상용 중인 자금업자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송금 한도가 제한(1회 100만 엔)되어 있으나,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제한이 없음. 따라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상용화가 이루어질 경우 추후 기업 간 결제 등에도 활용되는 등 사용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ST] ST의 경우 대중의 접근성 제고 및 기업의 활용 확대, 제도 정비(법적 지위·과세 방안 확보, 결제 리스크 해소 등)와 같이 발전하고 있으나 유통시장에서 투자자 풀 제한, 저조한 단기거래 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음.

- 일반 대중들은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대형 부동산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 접근성이 개선된 점, 기업들은 기존 고객에 대한 마케팅 수단 및 소규모 자본 조달의 일환으로 ST를 활용하게 된 점, ST의 법적 지위 및 과세 방안(매매차익: 분리과세, 기초자산 수익: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확립된 점 등에 더해 최근 DvP 결제 리스크 해소를 위한 실증이 완료되는 등 일련의 제도가 정비됨.
 - 마루이 그룹의 자사 카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채권(ST) 발행, 영화·엔터테인먼트의 소액 투자 등의 사례 등은 이러한 최근의 경향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¹³⁴⁾ 일본 내에서도 증권시장 상장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금을 자기모집(自己募集)하는 이러한 경향이 ST 시장을 견인할 구조적 변화로 지목되고 있음.¹³⁵⁾
- ST 발행을 위해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제1종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자본금 및 자기자본비율 모니터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스타트업보다는 주로 은행(증권사) 또는 자기자본 조달이 가능한 기업체 등이 상대적으로 참여하기에 용이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유통시장의 경우 일본 금융청이 ST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를 강화(유가증권과 동일 수준의 규제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한 점과 투자자 풀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향후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음.
 - 일본 금융청은 ST를 거래하고자 하는 기업은 유가증권과 동일하게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하고 PTS 시스템을 통해 유통·판매하도록 하였지만,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이 자본금과 건전성을 충분히 갖추고 거래업자 인가를 받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최근 ST 기초자산이 이전보다 다변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관련 자산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부동산의 경우 유동성이 낮아 주식 등과 같은 금융자산과는 달리 단기거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134) CoinPost(2023. 10. 28.), 「デジタル証券の成功事例 先進企業の取り組みと成果」, 동 보고서는 마루이 그룹의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이 ST를 '팬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135) Progmatt(2026. 1. 3.), 「2026年、日本でも1兆円突破へーAI×オンチェーン金融の"地政学"を読み解く。」.

- [암호자산·NFT] 일본정부는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화된 규정으로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으며, NFT의 경우는 산업 동향 등을 반영한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암호자산) 최근 암호자산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일본정부도 미실현 과세 폐지, 암호자산 ETF 도입 검토 등을 추진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암호자산을 기존의 「자금결제법」 소관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 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측면이 존재함.¹³⁶⁾
 - 「자금결제법」은 결제 안전 및 거래소의 운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발행사의 공시 의무나 미등록 영업 시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금융상품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발행사의 연 1회 정기 공시 및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자금결제법」보다 강함.
 - 즉 암호자산 투자를 허용하되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자금결제법」 하에서 규제하기 쉽지 않았던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제들(내부자 거래, 시세 조정, 무허가 영업 행위 규제)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음.
 - (NFT) 한편 NFT의 경우 단순히 예술 등의 분야에 일반 대중의 투자가 가능해진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역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치바시, 이즈모시 사례)되거나,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미츠이 스미토모카드 사례) 및 결제 접근성 개선(큐슈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 일본 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는 2024년 가이드라인 개정(3탄) 당시 “사업자의 NFT 관련 비즈니스 진입 촉진”이 목표¹³⁷⁾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전 가이드라인 이후 발생한 비즈니스 모델(금융 부문) 등을 반영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이 점은 최근 NFT 활용 제고의 계기 중 하나로 볼 수 있음.¹³⁸⁾

나. 시사점¹³⁹⁾

- [스테이블코인] 한국의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아직은 은행 중심인 것으로 보이나,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핀테크 등의 기업에 제한적으로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예금취급금융기관형(은행형), 자금이동업자형(자금이동업자, 핀테크), 특정신탁수익권형(신탁회사) 등 크게 세 부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가하고 있는데, 자금이동업자의 경우 발행액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신탁회사의 경우 보전자산 규정을 완화하는 등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발행기관에 적용하는 규제에 차별화를 두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분산 기준

136) 金融庁(2025. 12. 10.), 「金融審議会 暗号資産制度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 pp. 7~9.

137) JCBA(2024a. 8. 29.), p. 1, (2024b. 8.), p. 3.

138) 위의 자료.

139) 본 절에서는 일본의 다섯 가지 디지털 자산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자산들에 맞추어 시사점을 제시하되, 주로 스테이블코인, ST, 암호자산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함. 앞에서 살펴본 디지털 자산은 다섯 가지이지만, 세 가지 자산 위주로 시사점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자산이 2026년 6월 시점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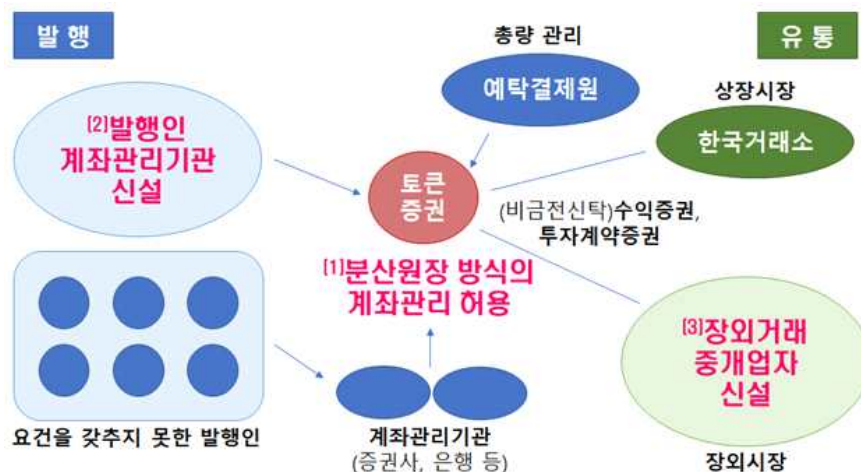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2026. 3. 기준)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임.¹⁴⁰⁾

-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발행액 및 규모 등에 제한을 두고 핀테크 기업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ST] 한국정부는 2023년부터 ST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향후 소규모 토큰들이 대량 유통될 가능성을 고려한 장외거래소 추진 방안, DvP 결제 시스템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은 2023년 금융위원회가 'ST(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① ST의 「전자증권법」상 수용, ② 발행인 계좌관리기관(ST 등록·관리) 신설, ③ 장외거래중개업(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대상)을 신설¹⁴¹⁾한 데 이어 한국거래소 내 유가증권시장에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하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세 곳의 예비인가¹⁴²⁾를 하는 등 ST 발행 및 유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그림 11 참고).
- 한국과 일본의 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① 단일 거래소 여부, ② DvP 결제 리스크 해소 여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PTS라는 사설거래시스템이 거의 유일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국거래소 내 상장시장 외에도 최소 세 곳 이상의 장외거래소가 존재함. 또한 일본은 토큰화 예금을 활용한 DvP 결제 리스크를 해소하였고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도 논의 중이나, 한국의 경우 아직 DvP 결제와 관련하여 시스템을 정비 중인 단계인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 장외거래소를 여러 군데 둘 경우 유동성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가 큰 토큰의 경우 신종증권거래소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향후 소규모 토큰들이 대량으로 유통될 가능성 및 이에 따른 혼선 등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¹⁴³⁾
- 또한 DvP 결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실증 테스트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ST 결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 공조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림 11. 한국의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자료 : 금융위원회(2023)에서 재인용.

140) 금융위원회(2026. 3. 4.),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141) 금융위원회(2023. 2. 6.),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142) 금융위원회(2026. 2. 13.),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 의결」.

143) JCBA(2024a. 8. 29.), p. 1, (2024b. 8.), p. 3.

■ [가상자산(암호자산)]¹⁴⁴⁾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등과 관련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책정 등의 논의 추진 외에도 향후 가상자산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한 제도 확충 및 규제 개선안 마련 등을 조기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경우 2026년 5월 기준으로 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 ②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 여부 검토, ③ 개정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 적용(2027년 1월 1일부터) 등 법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2단계 입법)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행위,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 주로 시장질서 확립 등과 관련된 점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¹⁴⁵⁾
 - (법인의 시장 참여) 20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하였는데,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 허용(2025년 상반기부터), 자격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시범 허용(하반기부터) 등임.¹⁴⁶⁾
 - (개정 세제 적용)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발생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간수익 250만 원 기본공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22% 세율 부과)될 예정임.
- 다만 1단계 조치 이후 법인의 실제 투자·매매 허용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¹⁴⁷⁾
- 이에 따라 향후 2단계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이를 위한 확대 논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금융자산으로서의 투자 확대 가능성 등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규제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KISP

144) 일본에서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주로 쓰이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병기함.

145) 금융위원회(2025. 1. 15.),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p. 3.

146) 금융위원회(2025. 2. 13.), 「법인의 가상자산참여 로드맵」, pp. 6~8.

147) 「법인투자 허용한다더니...1년 넘게 멈춘 가상자산 로드맵[법인투자 표류③](2026. 5. 27.).

참고문헌

[국문자료]

- 금융위원회. 2023.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2월 6일)
- _____. 2025.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1월 15일)
- _____. 2025. 「법인의 가상자산참여 로드맵」. (2월 13일)
- _____. 2026.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2.13.) 의결」. (2월 13일)
- _____. 2026.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3월 4일)

[영문자료]

- ECB·BANK OF JAPAN. 2018. 「Project Stella 日本銀行・欧州中央銀行による分散型台帳技術に関する共同調査 ― 分散型台帳技術によるDvP決済の実現 ―」.
- FCA. 2024. “Regulating cryptoassets: Admissions & Disclosures and Market Abuse Regime for Cryptoassets.”
- OECD. 2021. “Understanding the tokenisation of assets in financial markets.”
- _____. 2025. “Improving the digital financial literacy of crypto-asset users.” (August)
- JP Morgan. 2022. “International DeFi: The Next Generation of Finance?” (November)
- IMF. 2025a. “Crypto Assets Monitor: Q3 2025.”
- _____. 2025b. “Decrypting Crypto: How to Estimate International Stablecoin Flows.”
- _____. 2025c. “Tokenization and Financial Market Inefficiencies.”
- IMF and FSB. 2024. “G20 Crypto-asset Policy Implementation Roadmap Status report.”
- The White House. 2025.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일문자료]

- ODX. 2026. 「START 月次レポート・2026年1月」. (1월 6일)
- 株式会社三井住友銀行, 大和証券株式会社, 株式会社SBI証券, SBI R3 Japan 株式会社, 大阪デジタルエクスチェンジ株式会社, 株式会社BOOSTRY, Progmatic Inc, 株式会社Datachain. 2025.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セカンダリーマーケット (二次流通市場) 取引におけるステーブルコインを活用したDvP決済に係る実証プロジェクト開始」. (8월 22일)
- 金融庁. 2016. 「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
- _____. 2024. 「第5回 金融審議会 資金決済制度等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事務局説明資料」.
- _____. 2025. 「金融審議会 暗号資産制度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 報告」. (12월 12일)

- 九州電力. 2025a. 「SBINFTと九州電力はアートNFT販売領域での提携を開始します」. (6月 10日)
- _____. 2025b. 「SBINFTと九州電力はアートNFT販売領域での提携を開始します - デジタルアート市場の活性化と発展に貢献し、新たな体験を創出する実証を開始 - 」. (6月 10日)
- CoinPost. 2023. 「デジタル証券の成功事例、先進企業の取り組みと成果」. (10月 28日)
- JAL. 2023. 「JAL は「TODOFUKEN NFTコレクション」を通じて、デジタル上での新たなつながりを提供します」. (7月 20日)
- JCBA. 2024a. 「『NFTビジネ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第3版』を公表 ~最新の規制動向、業界の動き等を反映し、事業者には有益な情報をアップデート~」. (8月 29日)
- _____. 2024b. 「NFTビジネス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第3版」. (8月)
- JR九州. 2023. 「鉄道業界初！ NFTプラットフォームを備えた「JR九州NFT」プロジェクト、始動！！」. (5月 9日)
- 自由民主党. 2023. 「Web3.0ホワイトペーパー~誰もがデジタル資産を利活用する時代へ~」.
- JPX. 2024. 「CBDCフォーラムWG4デジタル証券の事例紹介・DVP決済の検討」.
- 自由民主党, 公明党. 2022. 「令和5年度税制改正大綱」.
- _____. 2023. 「令和6年度税制改正大綱」.
- JNTO. 2025. 「万博テーマ×観光体験を水墨画のNFTアートで世界に発信！（第2弾）~「万博をテーマに旅をする」welcome NFT を4月25日より配布開始~」. (4月 25日)
- 大和総研. 2026. 「大和の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ナビ 第1回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とは？」.
- デジタル庁 Web3.0研究会. 2022. 「Web3.0研究会報告書 ~Web3.0の健全な発展に向けて~」.
- 日本総研. 2022.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の概要と 市場拡大に向けた課題」.
- 野村証券. 2024. 「デジタルグリーンボンドの潮流と発展に向けた論点」. 野村サステナビリティクオアタリー 2024 Spring.
- 野村資本市場研究所. 2024. 「シンガポールで活発化する金融資産のトークン化-官民連携による資産トークン化プロジェクトを中心に-」.
- NOMURA. 2022.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を活用した「グリーン・デジタル・トラック・ボンド」の発行に向けた検討について」.
- _____. 2026. 「ブロックチェーン×デジタルマネーによる伝統的資産の取引と権利移転に係る実証実験が金融庁「FinTech実証実験ハブ」の支援案件に採択」.
- 三菱総合研究所. 2025. 「三菱総合研究所、出雲市と共同でNFTを活用した観光振興のフィールド実験を実施」. (4月 24日)
- 三菱UFJ銀行 外. 2025. 「複数の銀行による共同でのステーブルコイン発行とクロスボーダー決済の高度化に係る 実証実験が金融庁「FinTech 実証実験ハブ」の支援案件に採択」. (11月 7日)
- 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三菱UFJ信託銀行. 2023. 「グローバルに流通可能な「国産ステーブルコイン」発行に向けた 金融機関横断の共同検討参画について」. (9月 11日)
- 三菱UFJ信託銀行, Progmatt, JPYC. 2023. 「三菱UFJ信託銀行とProgmattおよびJPYCの協業による、「JPYC（信託型）」および国内外ステーブルコイン間の交換に関する共同検討開始について」. (11月 28日)
- 三菱UFJ信託銀行, Progmatt, STANDAGE, GincO. 2024. 「三菱UFJ信託銀行・Progmatt・STANDAGE・GincOの協業による、「国産ステーブルコイン」の貿易決済活用に向けた共同検討開始について」. (1月 31日)
- 三菱UFJ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 株式会社三菱UFJモルガンスタンレー証券株式会社, 三菱UFJ信託銀行株式会社, Progmatt. 2025. 「本邦初のトークン化投資信託の商品化に向けた基盤整備に関する協業開始」. (12月 4日)
-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22. 「NFTの動向整理」.

- SBINFT株式会社, CCCMK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三井住友カード株式会社. 2025. 「NFTマーケットプレイス「SBINFT Market」でVポイントサービスを開始」. (9월 24일)
- _____. 2025. 「NFTマーケットプレイ스「SBINFT Market」でVポイントサービスを開始」. (9월 24일)
- Pacific Consultants. 2025. 「【公共インフラ等地域資源の3D・NFT事業】千葉市動物公園NFTコレクションの特設サイトを公開」. (6월 23일)
- Progmatt. 2026. 「2026年、日本でも1兆円突破へ」-AI×オンチェーン金融の”地政学”を読み解く。.(1월 3일)

[온라인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 2025. 「국회입법현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검색일: 2026. 2. 21.).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홈페이지. 「『정책위의장』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검색일: 2026. 2. 20.).
- 법제처. 202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4474&ancYnChk=0#0000>(검색일: 2026. 3. 5.).
- 영국 재무부. 2023. “Future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for cryptoassets: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and call for evidence.”
- Bank of England. 2024. “Bank of England and FCA joint approach to the Digital Securities Sandbox.” (September 30). <https://www.bankofengland.co.uk/paper/2024/policy-statement/boe-fca-joint-approach-to-the-digital-securities-sandbox>(검색일: 2026. 2. 13.).
- _____. “Regulatory regime for systemic payment systems using stablecoins and related service providers.” <https://www.bankofengland.co.uk/paper/2023/dp/regulatory-regime-for-systemic-payment-systems-using-stablecoins-and-related-service-providers>(검색일: 2026. 2. 17.).
- ECB. 2025. “Just another crypto boom? Mind the blind spots.” (May). https://www.ecb.europa.eu/press/financial-stability-publications/fsr/special/html/ecb.fsrart202505_01~62255f2625.en.html?(검색일: 2026. 2. 12.).
- EUR-Lex.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Text with EEA relevance).” <http://eur-lex.europa.eu/eli/reg/2023/1114/oj/eng>(검색일: 2026. 2. 15.).
- _____. “Regulation (EU) 2023/11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information accompanying transfers of funds and certa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5/849 (Text with EEA relevance).”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113/oj/eng>(검색일: 2026. 2. 18.).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DLT Pilot Regime.” <https://www.esma.europa.eu/esmas-activities/digital-finance-and-innovation/dlt-pilot-regime>(검색일: 2026. 5. 3.).
- FATF. “International Standards on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he Financing of Terrorism & Proliferation.”
- Law Commission. 2025. “The Property (Digital Assets etc) Act 2025 has received Royal Assent.” (December 2). [legislation.gov.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29](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3/29) (검색일 : 2026. 2. 16.).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2.” <https://www.mas.gov.sg/regulation>

/acts/financial-services-and-markets-act-2022(검색일: 2026. 4. 17.).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Finalises Stablecoin Regulatory Framework.”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3/mas-finalises-stablecoin-regulatory-framework>(검색일: 2026. 4. 27.).

_____.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1.” <https://www.mas.gov.sg/regulation/acts/securities-and-futures-act> (검색일: 2026. 4. 16.).

_____. “Payment Services Act 2019.” <https://www.mas.gov.sg/regulation/acts/payment-services-act>(검색일: 2026. 5. 2.).

MAS. 2022. “First Industry Pilot for Digital Asset and Decentralised Finance Goes Live.”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2/first-industry-pilot-for-digital-asset-and-decentralised-finance-goes-live> (검색일: 2026. 5. 28.).

Regulation (EU) 2022/858 Recital 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2R0858>(검색일: 2026. 4. 25.).

Regulation (EU) 2022/2554. <https://eur-lex.europa.eu/eli/reg/2022/2554/oj/eng>(검색일: 2026. 3. 26.).

United States Congress. 2025. S.1582 - GENIUS Act. 119th Congress, 18 Jul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25. “Digital Money(TBAC Presentation to Treasury, 2Q 2025).”

United States Congress. 2025. H.R.1919 -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119th Congress, 17 July.

ASBJ. 「電子記録移転有価証券表示権利等の発行及び保有の会計処理及び開示に関する取扱い」. https://www.asb-j.jp/jp/accounting_standards_system/details.html?topics_id=77(검색일: 2026. 2. 25.).

E-Gov. 「暗号資産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https://laws.e-gov.go.jp/law/429M60000002007>(검색일: 2026. 2. 24.).

ODX ST. 「銘柄一覧」. https://www.odx.co.jp/st/ja/securities_info/securities_list/(검색일: 2026. 2. 28.).

_____. 「投資家の皆様へ：手数料およびリスク等に関するご注意事項」. <https://www.odx.co.jp/st/ja/>(검색일: 2026. 3. 2.).

_____. 「当社START市場の取扱銘柄についてのご注意事項」. <https://www.odx.co.jp/st/ja/>(검색일: 2026. 3. 2.).

株式会社SBI証券, 大和証券株式会社, 株式会社SBI新生銀行, 株式会社BOOSTRY, 大阪デジタルエクスチェンジ株式会社, 株式会社ディーカレットDCP. 2026. 「国内初のトークン化預金による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決済の実発行検証の完了のお知らせ」. (4月 24日). https://www.sbigroup.co.jp/news/2026/0424_16270.html(검색일: 2026. 5. 23.).

金融庁. 2022. 「令和4年資金決済法等改正に係る政令・内閣府令案等の公表について」. (December 26). https://www.fsa.go.jp/news/r4/sonota/20221226_3/20221226_3.html(검색일: 2026. 3. 11.).

_____. 2023. 「シンガポールMASのデジタル資産に関する官民連携イニシアチブ「Project Guardian」へのオブザーバー参加について」. (6月 26日). <https://www.fsa.go.jp/inter/etc/20230626/20230626.html>(검색일: 2026. 5. 23.).

_____. 2025.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説明資料」. (3月). <https://www.fsa.go.jp/common/diet/217/02/setsume.pdf>.

JPYC. 2026. 「日本円ステーブルコイン「JPYC」、シリーズB 1stクローズで総額17.8億円調達へー国内決済インフラとしての「実需」拡大へー」. <https://corporate.jpvc.co.jp/news/posts/series-b-first-close>(검색일: 2026. 3. 25.).

JVCEA. “Statistics information.” <https://jvcea.or.jp/statistics/information/>(검색일: 2026. 3. 2.).

Decurret. “Amic Signとは?” <https://www.decurret-dcp.com/service/>(검색일: 2026. 3. 25.).

日本STO協会. 「目的」. <https://jstoa.or.jp/about/about/>(검색일: 2026. 2. 27.).

日本銀行. 「DVPとは何ですか?」.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kess/i17.htm>(검색일: 2026. 3. 2.).
 Progmatt. 2026. 「「2026年、日本でも1兆円突破へ」—AI×オンチェーン金融の“地政学”を読み解く。». (1월 3일). https://note.com/tatsu_s123/n/n11d377cc095a(검색일: 2026. 2. 25.).
 TIS. 2025. 「TISとクエストリー、業務提携契約を締結し、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を活用したアニメ映画製作の資金調達を実施へ」. (2월 28일). https://www.tis.co.jp/news/2024/tis_news/20250228_1.html(검색일: 2026. 3. 22.).
 SBI新性銀行. 2025. 「国内初のトークン化預金による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決済の実発行検証に関する 協業開始について」. (12월 26일)

[언론보도자료]

「법인투자 허용한다더니...1년 넘게 멈춘 가상자산 로드맵(법인투자 표류)③」. 2026. 『뉴스1』. (5월 27일)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자본금 50억·업종별 ‘인가·등록’ 차등」. 2026. 『매일경제』. (1월 28일)
 「仮想通貨の税率が最高55%から20%に 投資先として存在感アップ」. 2025. 『日本経済新聞』. (12월 29일)
 「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流通市場「START」、開業3カ月の現状と今後——時価総額60億円から2年で1000億円を狙う：社長 CEO」. 2024. NADA NEWS. (4월 15일)
 「Kyuzanが共同開発する、スクウェア・エニックス初のNFTコレクティブルアートプロジェクト『SYMBIOGENESIS』、2023年12月21日に第一章リリース!」. 2023. PR TIMES. (12월 27일)
 「日本のステーブルコイン、3メガバンク相乗りで始動・ドル覇権に一石」. 2026. 『日本経済新聞』. (2월 2일)
 「三井物産、国内初の航空機・船舶のデジタル証券・拡大市場に個人マネー」. 2026. 『日本経済新聞』. (1월 12일)
 「ゆうちょ銀、貯金をデジタル通貨に来年度、口座ひも付け・証券決済速く」. 2025. 『日本経済新聞』. (9월 1일)
 「大作映画「宝島」を応援する「究極の推し活」映画デジタル証券を7月15日より販売!」. 2025. PR TIMES. (7월 17일)
 「【北國銀行】デジタル地域通貨サービス「トチツーカー」登録者数10万人突破!」. 2026. PR TIMES. (3월 27일)
 「店舗でのトークン化預金「DCJPY」の利用について検討開始 (JACDS/ディーカレットDCP)」. 2026. Payment Navi. (3월 30일)